

제43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19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감사원 소관
 - 헌법재판소 소관
 - 대법원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대법원 소관
- 업무보고
 - 감사원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군사법원
-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2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3
 - 감사원 소관
 - 헌법재판소 소관
 - 대법원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3
 - 대법원 소관
- 업무보고 9
 - 감사원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군사법원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37
-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 39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심사한 후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21일 금요일에는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준, 손성규, 정민규, 신동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갑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제1항 의사일정입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24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회의에서 법사위 소관 고유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구성하지 못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도 선출하려 하였으나 소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하여 아직 교섭단체 간사님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3개 소위원회 위원 정수와 교섭단체별 위원 배분만 결정하고 소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신속히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 위원 정수와 교섭단체별 위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모두 11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 1인으로 배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배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심사를 담당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배분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토론을 간단히 하고 다음 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법안2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소위의 위원 정수와 교섭단체별 배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어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법안2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소위의 위원 정수와 교섭단체별 배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님과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께서도 국회법 제48조 제1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8월 20일 내일 5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소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결산 및 법안 심사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2항과 3항의 내용입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감사원 소관

나. 헌법재판소 소관

다. 대법원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대법원 소관

(10시28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김호철 감사원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함께해 주시길요.

(인사)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관장님들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결산 개요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철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김호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다시 확고히 하여 감사원이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국회의 원활한 국정 심의에 도움이 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우 사무총장입니다.

홍성모 제1사무차장입니다.

윤승기 제2사무차장직무대리 겸 공직감찰본부장입니다.

임동혁 국민감사본부장입니다.

이윤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700만 원 대비 129.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411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495억 9300만 원 대비 94.4%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7억 7000만 원은 수입대체경비수입 6억 1800만 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억 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9억 9500만 원은 수입대체경비수입 5억 7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감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1469억 3400만 원은 인건비 979억 9400만 원, 기

본경비 134억 6400만 원 등 경직성 경비가 1114억 5800만 원으로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354억 7600만 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 성질별 이월·불용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7억 5000만 원으로 물건비 19억 8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7억 6300만 원을 계약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6억 4700만 원으로 인건비 6억 1500만 원과 기타 예산 절감 등에 따른 40억 3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대표적으로 전력수요 증가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감사활동경비에서 1억 85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10쪽 이후의 2025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재무제표 요약 설명자료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및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 법제사법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함께하시게 된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그동안 보내 주신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경청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 지성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심판지원실장 김소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하태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혁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책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600만 원이며 관사 임차보증금 2억 원, 기타 과지급액 반납 등 7400

만 원, 채용 응시료 500만 원,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등 28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84억 2400만 원으로 그중 56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4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률은 3%입니다.

지출액 566억 7600만 원은 인건비 338억 9300만 원, 기본경비 70억 1400만 원, 주요 사업비 157억 6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과 재무결산 현황의 보고는 제출한 결산 개요 6쪽 이하의 내용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필 대법원 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대법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제가 감기에 걸려서 들으시는 데 다소 불편하실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사법부는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현명하게 받아들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법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조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선지 사법지원실장입니다.

김우현 사법정보화실장입니다.

최승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5년 대법원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1조 1716억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조 6465억 원입니다.

2쪽,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028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1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4953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6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78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9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631억 원을 수납하였고 168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977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9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조 9925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9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9억 원이고 불용액은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78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810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00만 원, 불용액은 425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이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입니다.

수입계획액은 3903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8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862억 원을 수납하였고 20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액은 390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5억 원을 합산한 지출계획현액은 3928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862억 원, 이월액은 5억 원, 불용액은 7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 실적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8쪽 이하의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사법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고 법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아주 심히 침해되었습니다.

국민이 주신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재판을 하는 법관들께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법사위를 앞두고 어제 대법원장이 한 행태에 대해서 그동안 듣도 보도 못 한 행태였는데 말씀처럼 국민이 주신 세금입니다. 그것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위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3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함께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법사위 소관 기관들의 2025회계연도 결산 개관과 3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본 1페이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결산 개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 기준 2025년 예산현액은 법무부 4조 7864억 5500만 원, 대법원 1조 9924억 7900만 원 등 6개 기관 총 7조 580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6조 9699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법무부의 교도작업특별회계, 대법원의 등기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출 기준 2025년 예산현액은 4047억 원이며 이 중 88.7%인 3588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 기준 2025년 계획현액은 5377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81.1%인 4359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괄본 2페이지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검토사항을 총괄하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1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49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본 3페이지 감사원 소관입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총 9개의 사업 12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페이지 5번 감사활동경비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6월 디지털 포렌식 실시 요건 완화를 한 이후 포렌식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피감사자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감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7번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은 업무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의 개발인력 상주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공간을 활용함에 따라 집행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부적정한 이월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본 5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총 13개 사업 17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페이지 3번 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헌법연구관의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6명 중 97%인 74명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실무 법조인 출신에 편중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은 단순 법리의 적용을 넘어 심층적 이론 검토와 사회적 갈등 해결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국가기관 경력자 등의 채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인적 구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외교육 확대 등으로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적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강의 후 사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부정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 6번 재판활동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접수 후 2년 이상 경과한 미제사건 및 4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라 사건 증가세가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 미제사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심리 지원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의 각하결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안내와 상담 제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본 8페이지 대법원 소관입니다.

대법원은 총 30개 사업 4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8페이지 1번 총괄적 사항입니다.

대법원 소관 세부사업 중 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이 기본경비성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관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회계입니다.

9페이지 10번 법원시설 관리 등 사업의 경우 자산취득비 편성 필요성과 실제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으로 다른 경비의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 13번 본부 경비 사업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2025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석한 인원에 대한 숙박비를 국내여비 세목이 아닌 임차료 세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국회는 2023회계년도 결산 심사 당시 유사 사례에 대해서 주의 수준의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4년 7월 이후부터 해당 사례는 없으며 2025년 또한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또다시 임차료 세목으로 간담회 숙소를 집행하였으므로 시정 수준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입니다.

11페이지 20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사업의 경우 예수 규모 산정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페이지 29번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의 경우 형사소송기록 전자사본화 사업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각급 법원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소관 기관의 결산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제4항입니다.

4. 업무보고

- 가. 감사원
- 나. 헌법재판소
- 다. 대법원
- 라. 군사법원

(10시51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안규백 국방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시지요.

아니, 거기서 그냥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오셨다고.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가 소관 기관의 업무와 주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의를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서는 법사위원님들께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순서로 각 기관장님들로부터 현안 위주의 간략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에 4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업무보고를 위해 김호철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김호철 감사원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서 1, 일반 현황 2, 주요 업무 추진 실적 3, 그간의 감사원 운영 성과 4, 2026년도 감사운영 방향 5, 국회 관련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그간의 감사원 운영 성과입니다.

12쪽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을 임의로 소멸시키거나 압류를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적발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인력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했습니다.

13쪽입니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인공지능 분류기준을 개선하거나 딥페이크 사이트 차단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와 조달청 정기감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지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조달시장 정상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 민생안정 분야입니다.

무안공항 참사로 불거진 항공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항공안전 제도의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추후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직기강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국방 분야,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공직기강 취약 요소를 점검·적발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의대정원 증원 감사 등 국회에서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7쪽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99조에 따라 정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을 검사하고 회계오류 및 성과보고서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재무제표 검사 결과 총 19조 원의 오류사항을 시정하였고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성과 측정 부적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 감사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관위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실태 감사는 실질감사를 종료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감사운영 개선 실적입니다.

감사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간의 논란과 비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사회의 경직을 유발하는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치·표적감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통제 강화와 공직감찰 전담 부서 개편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현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국민체감형 감사를 확대하고 국회와 상시 소통·협력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 감사계획 수립 시 국회 논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중동전쟁 위기 시 적극행정지원을 약속하는 감사원장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면책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컨설팅 대상의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과잉·강압감사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의 전결권을 상향하고 문답조사 실시, 횡수·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감사 연장은 제한하였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감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승진후보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한편 감찰관 외부인사 임용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는 취임 후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위해 5대 운영 기조를 마련해서 관련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로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편익 기반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후·환경 위기 등 국가적

현황에 대응하여 역점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3쪽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등 운영입니다.

감사원은 그간 여러 비판이 제기된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원 운영에 대해 지난해 말 운영채신 TF를 구성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감사의 감사 착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조사, 진술조작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 후속조치 TF를 구성하여 감찰조사와 재심의사항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F 활동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2026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감사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목표로 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제·사회 시책의 효과성 강화 등 4대 중점을 설정하고 감사 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2026년도 주요 감사계획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요 재정관리제도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의 지출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자산 관리 현황과 조직운영 등에 대해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고루 잘 사는 경제 사회 시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금융제도와 불공정 관행 등을 점검하고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실효성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민생 안정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지방대 경쟁력과 같은 미래 요인 대비 실태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하도록 책임 추궁보다는 사업 성과 제고에 초점을 두는 한편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는 엄중히 조치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회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조금 더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원장님, 사무총장 하던 분이 감옥 갔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위원장 서영교 예, 유병호.

그리고 관저에 대한 감사가 잘 안 돼서, 관저를 만드느라고 김건희·윤석열 관저를 했던 TF 관계자 윤재순, 김오진, 김대기 전부 다 감옥 갔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구속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제대로 잘해 주십시오. 잘하는 것 잘한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제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권남용으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병호는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대로 잘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입니다.

손인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21쪽 이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심판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위헌법률심판 9건, 권한쟁의심판 5건, 헌법소원심판 3875건 등 총 388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사건 수는 총 3679건으로 위헌결정 7건, 헌법불합치결정 11건, 헌법소원 인용결정 16건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판소원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은 7월 31일 기준 1914건이 접수되어 이 중 1560건이 각하 또는 취하되었고 8월 12일 현재까지 1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도의 본질에 합치되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처리를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헌법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5쪽 미래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판을 지원할 필수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구성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민과 소통하는 헌법재판소 운영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견학,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8쪽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주요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활동과 상설 연구사무국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시아지역의 헌법재판기관 간 협력을 선도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 인권 보장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9쪽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 기능 강화입니다.

헌법 이론의 발전과 헌법재판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내외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의 전문성을 더욱 높ی겠습니다.

재판소 직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폭증하는 헌법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법조 인력, 공무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법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일반현황과 사건 통계는 자료 1쪽부터 42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입니다.

감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국 6개 고등법원 권역에 감정관리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의료감정 사건은 감정인을 확보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감정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감정 촉탁 대상 기관도 398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위탁거래 과정에서 기술 탈취나 유용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와 진술녹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 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신설되었습니다. 28년 2월 시행을 앞둔 만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부터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그 성질에 맞는 집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민사집행규정을 개정하고 해설서도 함께 발간할 예정입니다.

93쪽부터입니다.

현재 강제집행 등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직명도 그 업무 성격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쪽 이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도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02쪽입니다.

피고인이 한 번 이상 공판장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지난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입법 취지가 충분히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이하입니다.

지난 3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세 곳이 더해지면서 전문화된 도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지지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136쪽 이하입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5년 정부입법으로 처음 추진된 이래 제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진술 청취 의무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 아이들의 복리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분은 생략하고 발표문 8쪽의 153쪽 이하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법원조직법 등이 개정되면서 28년 3월부터 부산과 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입법 과정이었음에도 법안을 세심히 살펴주셔서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 개정으로 법원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역시 더욱 충실히 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최고위급 사법외교의 장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로 우리 대법원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15년 만에 다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약 5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10여 개 국제기구들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는 최초의 국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성화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사법적 대응 등 주요 현안을 각국과 함께 논의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층 확

대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269쪽,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법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 1월부터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갖춘 무인발급기 28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해당 발급기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에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언을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법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존경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망한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 제도를 운영하여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군내 법치주의와 선진 국방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과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와 군 사법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주요 간부입니다.

원종대 차관보.

김은성 기조실장님.

김홍철 국방정책실장님.

김성준 인사복지실장님.

합참차장 권대원 육군중장입니다.

다음은 군 사법 관계자입니다.

이광표 법무관리관님.

국방조사본부장 박정훈 해병대준장입니다.

국방부검찰단장 안지영 육군준장입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장 김종대 공군대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군사법원은 사건 처리일수를 단축하고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를 통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는 등 신뢰받는 군사법시스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검찰은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가운데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군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6년 7월 31일부로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공백 없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장병에 대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여 헌법교육을 의무화하였고 헌법상 국군의 지위와 임무, 법치주의 내용을 포함한 군법 교안을 배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징계제도 개선입니다.

갑질행위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양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엄정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 국방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 등 소송배상금을 조속히 집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군 사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세대 군 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는 공정한 군 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군 내 법치주의 실현과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장은 안 아파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지원 위원 대법원장은 안 아파? 행정처장은 감기 들었는데 대법원장은 멀쩡하시냐고요.

그리고 국민 관심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현안인데 현안보고에 왜 그게 빠져요? 대법원에서는 현안으로 안 보나요?

어떻게 됐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정치를 너무 잘해요. 정치꾼이야.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계엄 3개월 전부터 문건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나왔어요. 또 2차 특검에서는 계엄 종료일을 12월 13일로 정하고 있어요. 12월 4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4일 대책회의를 한 것은 내란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세력 아니에요,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니까 그러한 파기환송심을 하나요? 사법 절차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을 한 그가 어떻게 해서 대법관은 이따위 식으로 끼워 맞추기, 1 플러스 1 이런 정치 재주를 부리냐고요.

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청권자는 대법원장이예요. 제청은 과정이고 대통령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하고,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많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손봉기 부장판사님 임명한 것은 노태약 대법관의 후임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지원 위원 버스도 먼저 차가 출발해야 다음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지원 위원 그리고 손봉기 부장판사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의 한 사람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추천위원회가 추천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됐든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내막은 모르지만 청와대와, 즉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숙의, 협의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딱 서면으로…… 세상에 어디가 서

면으로 합니까? 과기환송 할 때도 전부 법사위원들이 가서 봤지만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에요? 책 6만 번의 기록을 몇 시간 만에 다 봤다고 하는…… AI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끼워 넣기 하는 것은 사법정치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사법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박지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 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 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 볼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이 아니면 왜 이렇게 하나고요. 앞차가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뒤차도 같이 밀어 넣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소통도 없이 서류로 딱 제출한다? 이게 말이 돼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앞차…… 손봉기 부장님에 대한 제청이 앞의 절차입니다.

○**박지원 위원** 앞에 됐는데 어제 서류로 같이 둘 했잖아요, 두 분을. 김성수 부장이 사람하고 둘 다 끼워 넣기 한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1?

아주 또 이례적으로 한 분은 부산 향판, 한 분은 향판은 아니지만 전남 함평 출신, 딱 보더라도 형평성 맞네,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 돼요?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바로 직전까지 신속하게 제청을 하라는……

○**박지원 위원** 이러면 국회에서 인준해 줄 것 같아요? 뻔히 알잖아요. 이건 안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사유로, 또 다른 여러 사유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나한테 탄핵해 봐라, 선전포고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요.

아까 처장님이 국회에서 이런 법 통과시켜 줘서 대단히 고맙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한테 무엇을 잘했어요? 내란세력 아니에요? 12월 4일 대법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미 국회에서 윤석열이 내란을 종식했다 하고 선언했는데도 대책회의를 열어서 계엄이 성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분만 더 주세요.

이걸 한다는 것은……

○**위원장 서영교** 1분만 더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특검에서요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해야 돼요. 내란세력이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죄송합니다만 대책회의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대책회의 안 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안 했습니다. 대법관들 모인 적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모인 적이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천대엽 전 대법원 행정처장은 왜 여기서 그 진술을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의 관련자들이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법관들은 모인 적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 자리에 안 가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간 적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오리발 낼 일이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지원 위원 사법정치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그 사유로 탄핵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탄핵소추 여부는 국회의 권한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런 사법정치꾼이 사법부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분이 다시는 사법부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탄핵의 목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해요? 일생 정치한 정치 9단 박지원보다 더 정치를 잘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똥차 하나 끼워 가지고, 끼워 맞추기 해서 일대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앞차가 나가야 뒤차가 나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더 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1분 더 드렸으니까 이쪽에도 그렇게 같이 배분을 하고, 그러나 그다음에는 그건 없으니까 시간 내에 맞춰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12월 4일 날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긴급간부회의는 있었지요? 12월 4일 12시 경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간부회의 있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런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거짓말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관이 아니니까 그날 안 갔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면 그날 회의가 있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가 이렇게 실렸 나왔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날 회의한 게 맞습니다. 회의를 한 이유는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이 재판이 계엄사령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위증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 내용을 몰라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모릅니다.

○위원장 서영교 기사도 안 봤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못 봤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나쁜 사람이네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순서가 위원장 순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할 임무가 있어요. 의사를 정리할 임무가 있는데,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12월 4일 날 보도입니다.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긴급간부회의 소집’, 그리고 여기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천대엽 처장이 다 이야기했고 당시에 이게 보도로 나온 이유는 법원에서 언론에 흘린 겁니다, 브리핑을 했든. 왜? 비상계엄 중에 우리 법원이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라고 말이지요. 아시겠지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취임한 이후로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요. 이 내용 알아요, 몰라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모릅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난번 질의에서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날 회의가 있었어요. 요 기사는 12월 4일 12시 26분 기사예요. 이거는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중앙일보, 채널A, 조선일보, TV조선 등등 모두 다 그날 그 시간에 보도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김태규 위원 위원장이니까 지금 뭐……

○곽규택 위원 질의 좀 합시다, 질의 좀 해.

○위원장 서영교 잠깐 기다리세요.

자세히 알아보고 오후에……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른 분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날 이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관은 그 자리에 안 갔을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회의를 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의 주요임무 종사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최민희 위원장도 7분 걸고 해요, 7분 걸고. 최민희 위원장도 7분 걸고 한다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매번 발언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김태규 위원 조용히 하게 만들고 계세요, 지금?

○박형수 위원 위원장이 정도껏 해요, 좀.

○김태규 위원 정도껏 하셔야지!

○곽규택 위원 질의할 때마다 위원장이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장 서영교 사실이 아니고, 여태껏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온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을 여기서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위원장이 이 부분을 체크 안 하고 갑니까?

○박형수 위원 확인해 보라 그러면 되지 뭘 그걸 질의하듯이 몇 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곽규택 위원 다른 민주당 위원님들 통해서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 나온 것이고 보도가 다 나왔는데 그런 회의를 안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바지저고리입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혼자 위원이세요, 지금?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안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대법관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회의는 있었고 그러면 이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와야지요, 대법원 행정처장님이시라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긴급간부회의 소집’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 기사예요. 대법원장 지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스스로 이야기했고요, 법원행정처 차장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요.

○김태규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이 이 내용을 몰라요. 위원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국정감사에서 다 지적한 거예요.

○김태규 위원 아니, 알거나 모르거나 지금 이게 회의 방법입니까?

○위원장 서영교 실드 칠 걸 치세요.

○김태규 위원 누가 언제 실드 쳤다 그래요. 지금 본인 의견 혼자서 다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실드 칠 걸 치세요.

다음 진행합니다.

○곽규택 위원 진행 좀 하세요, 진행 좀.

○김태규 위원 회의 진행하세요. 진행하라고 위원장 앉혔지 자기 의견 얘기하라고 위원장 앉혔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국회법 제49조……

○김태규 위원 그놈의 국회법은 위원장에게 유리한 얘기 할 때만 합니까.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해요. 시끄러워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 이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다 확인된 내용을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정리하는 게 맞아요.

○김태규 위원 의사진행 좀 하세요!

○김용민 위원 예의 좀 지킵시다, 예의 좀.

○김태규 위원 예의를 안 지키시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해요, 김태규 위원.

다음 순서입니다.

○김태규 위원 진행이나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판사 출신이라 그런가?

○박형수 위원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다음은 국민의힘 광규택 위원 질의하세요.

○광규택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국회 나오시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오늘 국회에 나오면 어떤 질의가 이어질 것이다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나오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광규택 위원 대법관 제청한 그 2명의 대법관이 누군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됐고요. 대통령의 사전 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게 지금 더 큰 주제가 됐고, 그것을 이유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 여러 민주당 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다 또 대법원장 탄핵몰이 할 거다 예상하고 나오셨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광규택 위원 따져봅시다.

우리 헌법 제104조제2항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광규택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전에 특정 후보를 찍어 가지고 이 사람으로 제청해 주세요 이렇게 대법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규택 위원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법에도 없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리고 누구를 대법원장에게 제청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거니까 그 사람은 제청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습니다.

○광규택 위원 없지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인은 안 된다고 요구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헌법 절차 위반한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 개인적으로는 특정인을 반드시 제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규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적인 간섭이요.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탄핵 사유예요, 명백하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 요구했는데 대법원장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 가지고 장기간 대법관 제청이 안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헌법 조항에, 다른 법률 조항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런 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 하는 말 있지요, ‘법에 없는데 어찌라고’. 그렇게 대법원장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관례를 따라야 되느냐, 어찌라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뒤에서 요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제 나오잖아요. 내란몰이 시작했어요. 탄핵몰이 시작했어요. 두고보십시오. 이제 탄핵안 발의될 겁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장께서 똑바로 입장을 말씀 못 하시면 이제 그런 순서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2028년부터 우리나라 대법관이 3년에 걸쳐서 1년에 4명씩 늘게 돼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헌법 조항에 따르면 이것 대법원장이 다 제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국민들이 우려하냐면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퇴직한 이후에 자기 재판, 지금 유죄취지 파기환송되어 있는 그 재판 뒤집게 하려고 26명의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런 식의 잘못된 관례, 누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도록 미리 요구하는 대통령의 입김, 관여 이런 것이 철저히 차단되지 않으면 그런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퇴임 후에 26명의 대법관 이재명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꼭 채우겠지요. 그렇게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법원행정처, 대법원장의 임무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안규백 장관님, 오늘 군사법원이라는 국방 전체로 보면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셔서 업무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정치 경력도 많으신 장관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소명됐던 내용들이……

○**곽규택 위원**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실 너무 개인적인 문제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측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는 김정은이랑 직접 북미 대화 해 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동안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우리나라 좌파 정부에서 조금 줄여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전례는 있었지만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 연합훈련 축소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던 방위자산 빼 가지고 중동으로 돌려. 그리고 나 김정은이랑 직접 대화할래. 대한민국 대통령 패스해. 노 땡큐라잖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장관인 저와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측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된 것이나 우리의 요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한미가……

○곽규택 위원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우리의 요구가 없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미 당국자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대로 사전에 우리하고 어떤 협의를 하거나 우리 측 요청이 없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 축소를 지시한 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님은?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이후에 제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과의 협조 거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알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긴밀히 계속 상의를 해 오고 있고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 위원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최고 권력자의 빗나간 시각이나 빗나간 대응 때문에 우리 안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도 한미가 연합훈련과 교육에 대해서 건수가 더 늘어났고 한미 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손봉기 대법관후보가 먼저 제청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요, 그분이 노태약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는 뜻입니다.

○김기표 위원 같은 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같은 날에 한 것 맞습시다만……

○김기표 위원 같은 날에 한 게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데 앞에 먼저 퇴임하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그거잖아요. 먼저 공백이 생긴 그 대법관 후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정상인데 왜 1 플러스 1로 하느냐 이걸 지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변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한번 물어보지요.

지금까지 야당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대법관후보 제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즉 서면으로 대법원장이 발표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묻는 것에서 답을 하세요.

서면 통보해 버리고…… 보통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예방을 해서 대통령과 차담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제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청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그동안 청와대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리해 왔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된 것은 맞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협의는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어제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십시오. 시간 드리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보직 이동을 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기표 위원 대법관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 동의도 얻고 대통령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기표 위원 그것은 행정처장님도 아시겠지만 헌법 체계에서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최고법원을 이룩하는 사람은 단지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안 되고 국회라

는, 그러니까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뽑은 대표 국회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더욱더 국민의 대표로 인정받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된다 그것을 천명한 겁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기표 위원** 대법원장은 단지 제청권만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임명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헌법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간극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 협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최종적인 의사는 어디에 따라야 됩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제청권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던져 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야말로 대법원이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대법관 임명 과정을 완전히 정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청권이 어찌냐……

○**박형수 위원** 법률 해석을 회한하게 하고……

○**김기표 위원** 조용히 하세요.

제청권이 어찌냐 임명권이 어찌냐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하는 과정을 지금 정치화하면서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동의 안 해서 비준이 안 되면 국회가 거부했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이 사법부의 공백에 책임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수순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듯이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복판의 구렁텅이에 빠트리 놓고 ‘우리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끝까지 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처장님, 이것 하나만 사실관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이 노태악 후임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의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는 했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얼마나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김기표 위원** 새로 추천을 한다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김기표 위원** 그 네 분이 동의하면 새로 추천이 가능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니까? 대법관후보는 어떻게 추천돼요? 일단 11일 정도 천거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천거받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기표 위원** 그다음에 그 천거받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 내세요’ 합니다. 그것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바쁜 사람들이예요. 법무부장관 오라고 하지요,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라고 하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런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회의해요. 자료 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4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존중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존중해야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존중하기니까 모두가……

○**김기표 위원** 그게 지금 대법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존중하면 존중은 하되 아예 딴 사람 하십시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뭐 하러 다시 열라고 합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왜 다시 열어요? 존중은 하시고 딴 사람 개인적으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모두가 안 한다 하면 어떡합니까?

○**김기표 위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동안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하니까 규칙도 아니고 법원조직법에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존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썩 무시하고 그동안 했던 절차는 무시하고 새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게 법원행정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 혼자 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기표 위원** 대법원장이 안 시켰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시킨 적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본인이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어떻게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 4명한테 다 전화해 가지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무력화시키고 다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만들테니까 동의해라, 이것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동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동의하라고…… 그러면 전화를 왜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물어본 겁니다, 의견을.

○**김기표 위원** 그게 그거지, 그러면 행정처장이 전화하는데 그게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지 물어본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권의 독립이 뭐니까?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에요. 법관한테 법원행정처장이 전화해 가지고 ‘당신, 후보자로 올라왔는데 물러나. 우리가 다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게’, 이것이 사법권 독립을 외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할 일입니까!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직권남용이고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청와대에도 그런 제의 했지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할 수 없냐고? 이것이 법원행정처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법원장 없이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대법원의 민낯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승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3분만 드리세요.

○**김승원 위원** 오늘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등장했는데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추천위를 통해서 추천된 4명에게 처장님이 전화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 가운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했을까?

저도 김기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법원장과 상의는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묵시적인 동의하에,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지금 법원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경위와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원 위원** 지금 후보자에게 자기의 모든 일생의 판결과 개인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을…… 후보자에게 그런 전화를 한 것이 아무런 사법부의 잘못이 없다거나 압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증인한테 하지 마십시오. 법원행정처장에게 하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이라면서요.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답할 사람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평균 9일 정도 걸리는 대법관 제청이 209일이나 걸렸는가, 그리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전날 서면으로 툭 하고 일방적인 통지를 해 버렸는가, 그리고 국회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이렇게 서면 통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을 알면서도 왜 했는지 직접 대법원장을 불러서 저는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회법에 특정 사안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77조와 121조에 따라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즉시 상정·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서 209일간 제청을 지연하는 이유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돌린 이유 등등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명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김승원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 내용을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요구하셨으니……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셨고요.

박형수 간사님, 3분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기본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의 요건을 지금 김승원 간사님이 지키지 않으세요. 법원행정처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질의 내용도…… 다른 위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든지 출석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법원행정처장이 다 못 했는데 김기표 위원이 질의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다, 저는 이것은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오늘 이것을 위해서 회의를 늦게 들어왔구나, 이것을 숙의하느라고 그랬구나, ‘김기표 위원이 그렇게 하면 대법원장 출석요구를 하자’ 이렇게 사전 작전을 모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승원 위원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박형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따져서 물어보면 되지요. 왜 이백며칠 동안 이게 지연이 됐느냐? 국민 모두가 다 압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제청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싫다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대법원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물어본다고 여기에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법사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안 질의를 왜 합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 그 이유 속에 뭐가 포함돼 있는지, 정말로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고 했는지 또 협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따져 묻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다 전제를,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된다고 지금 전제를 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청권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제청권 왜 있는 거예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야 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 동의권이 있는 국회의 의견은 왜 묻지 않습니까? 국회하고도 상의해야 됩니까, 제청권 행사할 때? 도대체 법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에요.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가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임명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임명이 형식적인 임명권한이냐, 실질적인 임명권한이냐에 따라서 그 부작위가 법률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겠지요. 그런 것을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무슨 정치적인 술수라고요? 대법원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인 술수가 있는 정치꾼으로 만드는 분들이 누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박형수 위원 말이 안 된다고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지적을 하더니……

○박형수 위원 그래서 지적했어요.

○위원장 서영교 간사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한 것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그것 따라서 했어요, 나도! 저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해요?

○주진우 위원 대법원장 부르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시키자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박형수 위원 그것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는 게 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위원장한테 하세요.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것은 놓쳤잖아.

○박형수 위원 뭘 놓쳐요?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한테 해야 되는 것은 놓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해야지.

○박형수 위원 위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채택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말해 봐요.

○박형수 위원 뭐를?

(웃음소리)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님’ 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 하고 하시라고.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시라고요. 박형수 간사님, 아시겠지요?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두 분 정도 듣고 아까 제안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은 양쪽에 한 명씩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온 세상의 언론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의사 진행발언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무슨 진행을 추가로 진행합니까, 지금 위원들 질의 중에?

○위원장 서영교 반말하셨습니까, 지금?

○주진우 위원 아니요. 무슨 질의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질의 중에 왜 그것을 하냐고요. 어떤 의사진행을 추가로 합니까? 제가 언제 반말했어요?

○위원장 서영교 반말했냐고 물어봤어요.

○주진우 위원 반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됐어요.

김기표 위원 하였고 김민전 위원, 김남희 위원 두 분의 순서가 남아 있거든요. 계속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의 결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제가 전 세계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국가의 의회이면서—그것은 대통령제일 수도 있고 의원내각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대법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들을 보면 중신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술주정뱅이다 이런 이유로 탄핵소추 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소추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제가 정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드리고요.

지금 김기표 위원께서 국민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안규백 장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의하면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하는 의혹 혹은 사퇴해라라고 하는 게 70%를 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 뜻을 안 따르시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미 1년 전 청문회 때 다 소명된 바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청문회 때 소명되었다라고 빼꾸기 얘기하듯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고요.

제가 엄마로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2일 동해안 그 깊은 바다에서 우리 해군 병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실종되었을 때 안규백 장관과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보도들이 되었고 또 목격담이라고 하는 SNS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을,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습니까?

○**김민전 위원**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민전 위원** 제가 말하는 게 허위사실이면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의혹이 있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24년 10월 이후에……

○**김민전 위원** 제가 골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갔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4년 10월 이후에 2년 동안 골프 한번 친 적이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러면 대통령만 쳤다는 얘기사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골프 친 사실이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7월 달에 이 병사가 실종되고 시신으로 수습되었을 때 기사들을 보면 사망의 원인, 실종의 원인을 조사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병사의 이름도, 왜 실종이 되었는지, 왜 사망했는지 아무런 이유도 기사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막고 있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릴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 무슨 조사가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포렌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과정이……

○**김민전 위원** 무슨 포렌식을 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병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랄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채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전 위원** 제가 언제 발표를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가족들이 애타고 있을 때 대통령의 골프설이 나왔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아들을 군에 보낸 많은 부모들을 상당히 분노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관계가 분명히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전 위원** 앞서서도 을지훈련 축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첫째는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의 대북 정보 협력이 안 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부분적으로 상당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렇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노 땡큐(No, thank you)라고 하는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에 을지훈련 축소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사실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민전 위원** 트럼프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민전 위원**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와 관련해서 협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김민전 위원**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민전 위원** 그런데 왜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팩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전 위원** 팩트 내용이 뭐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전 위원**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을지훈련이 단순히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훈련이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두려운 내용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쿠광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온플법, 입틀막법에 대해서 다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친중적인 공산주의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미국의 시각이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을지훈련 축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또다시 애치슨라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까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치가 생물인데 저는 외교도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 전쟁부나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틈없이 준비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너무나 틀에 박힌 대답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미국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3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관은 이것을 협동성과 합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이 부인했습니다. 육사가 쿠데타를 세 번이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게 맞는 말인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3군사관학교 통합은 미래전에 대비하고 또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거기에 합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3군사관학교를 통합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면서 우리 생도들을 더 현대전에, 미래전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합동성 강화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뜻을 국방부장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의 쿠데타라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세 번의 쿠데타가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12·3……

○**김민전 위원** 그런데 왜 서울대는 안 없애나요? 서울대 법대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니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망가뜨린 사법부의 수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지금 질의만 하고 나가셨는데요, 공부한 지 오래되셔서 헌법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헌법 제104조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조문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는 대법관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법관 임명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부의 숙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은 연방대법관을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각 중심제인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내각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분담하여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체 구성원 중 하나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고요.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헌법에서도 반드시 입법·사법·행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관 선임에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 개입을 통해 최고법원 구성에서 국민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는 절차다.’ 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서울대학교 총장 되셨고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 역임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적 헌법학자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의 정신은 대법원 구성에 삼부의 숙고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 간 권력분립과 견제, 균형을 이루기 위한 권한 분배입니다. 대법관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법원장 제청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적 정당성 부여 절차의 출발점일 뿐 모든 절차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법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헌법 조문에 따르면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임명 가능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청권만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원과 행정부의 논의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입법·사법·행정 세 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법관을 추천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관이 대법원 구성을 독점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사법·행정부의 소통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대법원장의 독주를 방관하고 동의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법관 임명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누구보다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 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 수장이 흔들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정치 한가운데로 사법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것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법원의 일원으로 우려되지 않으세요?

행정처장님, 대법원장 서면 제청 언제 하셨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제 한 3시 좀 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남희 위원** 서면 제청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하는 양식에 따라서.

○**김남희 위원** 행정부와 조율도 안 된 상황에서 합의 안 된 대법관 서면 제청하면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 결국 임명도 안 될 거라는 것 예측 못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남희 위원** 지금 예측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떤 것에 대한 예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희 위원** 지금 합의 안 된 대법관 서면 제청하면 당연히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임명 안 되잖아요. 임명동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이런 혼란이 올 거라는 것 예측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지금까지 제청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남희 위원** 예측을 못 하셨다면 무능한 것이고요, 예측하셨다면 행정처장님도 사법부 흔들 공범입니다. 법원 흔들고 사법부 독립 흔들고 정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 책임 행정처장님도 같이 지셔야 합니다. 법원의 구성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정치행위 말리지 못한 책임 행정처장님 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제 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법 망가뜨리고 사법부 정치화하고 사법부 독립 저버린 책임, 대법원 구성에 입법·사법·행정이 협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과정을 저버린 책임, 대법관 구성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 스스로 정치의 영역으로 사법을 끌고 온 책임을 이제 사법부 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더 이상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격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더 이상 그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주십시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2시14분)

○위원장 서영교 김승원 위원께서 2026년 4월 19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박형수 위원 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요. 쓸 데도 없는 것을 가져왔어.

○위원장 서영교 행정실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안 받겠다는데 뭘……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이 이상하잖아요.

○김태규 위원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위원장 서영교 부드럽게 이야기하셔야지요.

○박형수 위원 나는 부드럽게…… 위원장님이나 부드럽게 얘기해요.

○위원장 서영교 행정실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박형수 위원 별것을 다 얘기를 하시네.

○위원장 서영교 별것을 다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보다 내가 훨씬 부드러워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우리끼리는 서로 경쟁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 다 나눠 드렸지요?

더불어주당의 김승원 위원께서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후보 제청 과정 및 김건희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그 과정 속에서 특검법에서는 6개월·3개월·3개월을 지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이 임박해서 며칠 남겨 두지도 않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사유 등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리는 데는 대법원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는 김승원 위원 외 한 분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진우 위원 겨우 이것 하려고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교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내란 일으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을 창피한 줄 알아요.

○김태규 위원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김승원 위원 사상 초유의 일인데……

○김용민 위원 내란 저지르고도 안 부끄러워하는데 뭘,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박형수 위원 사상 초유의 일은 맨날 그쪽에서 하잖아.

○위원장 서영교 표결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아 위원 내란 일으킨 당이 그런 말을 합니까?

○박형수 위원 내란을 우리가 일으켰다고? 사람이 말을 똑바로 해야지.

○김동아 위원 1호 당원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김태규 위원 내란 유발한 게 그쪽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쪽 1호 당원은 부패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 다 부패당이네.

○김동아 위원 확정도 안 됐는데, 범죄가 확정 안 됐잖아요.

○박형수 위원 이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로.

○김태규 위원 선거사범 아닙니까, 선거사범. 선거사범당!

○김동아 위원 내란으로 탄핵도 했잖아요.

○김민전 위원 내란도 확정 안 됐는데 왜 그러세요?

○김태규 위원 선거사범당! 범죄당!

○김동아 위원 내란당!

○김태규 위원 맞잖아요. 범죄당!

○김동아 위원 내란당!

○김태규 위원 범죄당! 언제까지 가나 한번 해 봅시다.

○김동아 위원 내란당!

○김태규 위원 범죄당!

○김동아 위원 내란당!

○김태규 위원 범죄당!

○김동아 위원 내란당!

○김태규 위원 범죄당!

왜, 더 하시지? 범죄당!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김동아 위원 부끄러워서 안 합니다. 쪽팔려서 안 합니다. 유치해서 안 합니다.

- 김태규 위원 쪽팔린지 아시면 처음부터 하지 마시지.
 ○김동아 위원 거기서 먼저 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태규 위원 왜 반말하십니까?
 ○위원장 서영교 뭘 반말을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하지 말고 위원 그래요?
 ○김용민 위원 제지 좀 해 주세요, 제지 좀.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이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

(12시16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후보 제청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김건희·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해 2026년 4월 19일 오늘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주진우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주진우 위원님과 그리고 김용민 위원님 두 분 토론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3분 토론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민주당 위원들께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 했더니 거기 모여서 작전회의 한 게 결국은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망신 주기 또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 이런 건데요.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딱 헌법정신이 나와 있어요. 2023년 6월 5일 오전 9시 반에 당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고민정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관의 제청·동의·임명의 주체를 구별하고 있고 그중에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코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직접 했거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사법부의 영역인 대법관의 후보 추천 절차나 지명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까지 발언했습니다.

당시의 민주당 입장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뭡니까? 그리고 헌법 규정상으로도 명확하게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을 하고 국회 동의 여부를 따진 다음에 뒤늦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임명 못 하겠다고 하면 임명

못 하는 사유를 달아서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대법원장을 갑자기 뜬금없이 결산 회의 때 불러서, 그것도 이재명 당시 피고인의 재판을 또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냐 이런 이유로 한다? 저는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권력남용이고 의회독재고 또 굉장히 국민들에게 낮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원행정처장 답변도 제가 보니까 실제 왜 오죽하면 실컷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다시 전화해서 다시 원점으로 절차를 되돌리려고 한번 물어봤겠습니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청와대에서 딱 찍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한 명을 찍어 가지고 임명하겠다고 우기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다른 후보들을 다시 검증하든지 다른 절차를 밟자고 몇 개월이나 공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김용민 위원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내란범 그리고 국정농단범 김건희, 김건희는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요. 이 사람들 재판 중이니까 아주 국민의힘이 애가 달아요, 애가 달아. 대법원에 무릎 꿇고서 대법원장 지키려고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안달이 났어.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기가 창피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진우 위원 질의하실 때 헌법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다고 제가 지금 칭찬하잖아요. 좀 들으세요.

이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하는 것 헌법에 언제 들어갔는지 아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모릅니다.

○김용민 위원 모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이게 유신헌법에 들어갔어요. 대통령 박정희가 입법부, 사법부 다 자기 손에 쥐려고 그때 대법원장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해 놓고 이 대법원장이 모든 판사를 다 제청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판사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판사를 다 임명했어요. 볼까요, 여기 뒤에? 그때 유신헌법 103조 2항입니다.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사법부 독립 때문에 제청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법부를 권력이 장악하기 위해서 제청권이 들어갔던 것 이게 역사예요. 법원행정처장이 이 정도는 알고 와서 얘기하셔야지 이것도 모르시고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현재 87년 헌법에 민주화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간신히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누가,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 사례에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예는 해외 사례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정신하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라는 것입니다.

처장님, 대법관 임명 제청은 재판하는 겁니까, 사법행정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법행정입니다.

○**김용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법행정입니다.

○**김용민 위원** 분명히 사법행정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국회에서 대법원장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이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 그래서 거부했는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왜 못 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제까지 대법원장님께서 국회에……

○**김용민 위원** 국회법에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다라고? 그리고 국정감사 할 때 대법원장 안 나오니까? 다 나와요.

위원장님, 이것은 답변을 좀 들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국정조사나 청문회, 현안 청문회로 법사위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서면동의서에는 우리가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청문회까지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위원** 토론을 종결해 주시고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토론 종결 제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김승원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기표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지요, 당연히」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따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라 2026년 오늘이지요, 오늘 8월 19일 회의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감사원장께서도 오늘 업무보고에 출석해 계십니다. 국회법 제121조입니다. 국회법 제121조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의 내용입니다.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동안 대법원장은 출석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를 위해서도 저희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국정감사라든지 기본적인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등에는 대법원장께서 출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을 관례로 법원행정처장께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 당연히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대법원장께 출석요구를 알려 주십시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지금은 12시 반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오후 질의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했으면 하십니까?

○박형수 위원 오후 질의로 가야지. 12시 반인데 뭘 또 계속합니까?

○김승원 위원 오후 질의로 가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제가 그날 12월 4일 12시 26분 보도, 대법원장의 지시로 회의가 있었다, 이게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군사법원으로 그리고 계엄사령부로 이 재판의 관할을 넘긴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그 내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경위를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뒤에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런 회의가 그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박형수 위원 오후에 한다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그 얘기할 겁니까?
- 위원장 서영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 박형수 위원 본인한테나 중요하지요!
- 위원장 서영교 일반인이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계자분들은 헌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불법이라고, 나와 있는 이 여의도 곳곳에서 이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사범이 되어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날 재판 관할을 비상계엄사령부로, 계엄사령부로 넘기겠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그런 회의가 있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김민전 위원 가정법으로 왜 질문을 해요?
- 김태규 위원 몇 번을 합니까? 그만합시다.
- 위원장 서영교 국민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 박형수 위원 나가서 유튜브 가서 얘기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 김태규 위원 쇼츠 찍으세요?
-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질의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손봉기 후보자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협의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 위원장 서영교 확인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쭙봤고.
- 위원장 서영교 협의가 있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공표하기 직전까지 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 협의가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협의가 시작됐는데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로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요 지금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손봉기라고 하는 후보자로 협의가 있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 박형수 위원 아니, 위원장 질문 시간에 해요! 위원장이 질문 시간에 하라니까요! 혼자서 무슨 법사위원인가……
- 김태규 위원 아까 했던 질문 또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끝내세요!
- 위원장 서영교 제가 확인을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손봉기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냐고 했더니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로 협의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 위원장 서영교 언제부터 손봉기로 협의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 일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구체적인 일자를 압니까? 그날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서면……
- 위원장 서영교 확인했는데도 그렇게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박형수 위원 아니라잖아요. 답변 강요하지 마세요.
-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로 협의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했습니다.
- 김태규 위원 고문 수준이에요, 고문 수준.
- 김민전 위원 청와대도 출석시키지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했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못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의에 이르는 못 했지만……
-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로 협의를 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협의했습니다.
- 김태규 위원 왜 제청권자만 나와요, 임명권자도 나와야지. 대통령 부르세요.
-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후보자에게 사퇴를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본인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대법관후보자들에게 전화해서 사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전화는 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전화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 박형수 위원 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 김태규 위원 조사실 불러서 조사하세요, 그냥.
- 위원장 서영교 전화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 김태규 위원 조사실 불러서 하시라고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차근차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서영교 말씀해 보세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국회, 정치 또 언론에서 조속하게 임명 제청하라는 요구가 빗발친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

○위원장 서영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제청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실무진들이 그렇게 논의하고 후보자에게 전화를 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들은 참모로서 대법원장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 자료를 제공할 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방안은 어떨까, 이런 방안……

○위원장 서영교 후보가 사퇴하는 방안이 어떨까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퇴가 아닙니다.

○박형수 위원 대답 좀 들으세요! 대답하라면서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퇴가 아닙니다. 모두에 대해서 지금 검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색된 상황을 풀기 위해서 추천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추천위를 꾸려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후보들 모두께서 동의해야 되고 한 분이라도 반대하신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안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그래서 각 후보들께 이러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유롭게 답변하시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의하셨고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폐기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후보들이 사퇴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안을 전달했다 이 말씀이지요? 후보들이 사퇴하면 새로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었습니다. 사퇴하라고……

○위원장 서영교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러니까 후보께서 ‘전원 사퇴하시면 새로 꾸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해석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모두가 안 하신다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모두가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모두가 사퇴하면 할 수 있으니 사퇴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요,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 사퇴라는 단어를 안 썼다잖아요.

○김태규 위원 한국말 모르세요?

○박형수 위원 사람 말귀 못 알아듣습니까?

○김태규 위원 한국말 모르시냐고.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모두가 사퇴하면 새로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 이 말인 거지요?

○김태규 위원 이제 쇼츠 각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위원장 서영교 직권남용인 거 알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직권남용인 거 알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행정처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대법원행정처장의 생각으로 나올 만한 것도 아닐 것이고 대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이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러 놓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 위원 왜 재판을 하세요, 여기서?

○위원장 서영교 다시 한번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장이 나와서 특별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위원장이 대법원장 다 하세요, 재판도 다 하고.

○김승원 위원 제청위원회를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 그냥 기소하고 판결 다 하시면 되겠네. 집에 가세요, 그냥.

○김승원 위원 아까 김민전 위원이 말씀하신 법무부장관 추천위원회 결정을 다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답변하잖아. 그러면 답변했으면 들으면 되지, 각자 해석해야지 그걸 왜 위원장이 다 다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김승원 위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절차를 밟은 건데.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이……

지금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윤석열입니까?

○김민전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으세요?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장님, 현재 대통령은 누구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를 하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 차례이나 아직 오지 않으셔서 그사이에 제가 잠시……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장께 출석하시라고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121조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국회법 121조에 의거해서 동의가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의결했습니다. 연락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뭐 한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통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뒤에 상황이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대법원장실에 연락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답변은요? 오고 계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일단 연락을 한 상황이고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높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국회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잘못할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입법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헌법재판소장님도 저희가 요청하면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임무로 아주 시급한 상황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국방부장관도 와 계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께서는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대통령을 패싱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출석 요구를 의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는 시간에는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국회법 121조에 의해서 기본 국정감사, 기본 업무보고에는 그냥 대법원장은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때에 특정하게 출석을 요구할 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국회법 121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시면 법 위반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가 있고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희가 사전에 요청하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조문에는 나오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국회에 대법원장은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국회에 대법원장은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국회에 대법원장이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출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다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조문에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것은 특정한 사안에 특별한 질의일 때입니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 기본 업무보고, 항상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특정한 사안일 때 특별히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대법원장이고 그렇게 해석해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직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중간에 방패막이가 돼서야 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집중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다시 확실하게 국회에서 의결한 사안이고 출석해야 된다고 전달하십시오.

대법관은 황제가 아니에요. 법원에 있는 황제가 아니에요. 삼권분립에 의해서 국회에서 출석 요구하고 질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후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현행법상 재판관을 받는 사람이 재판장을 고를 수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 전에도 담당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서 재판관을 재개하게 되면 재판관은 열리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미리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주진우 위원** 저는 대통령이 지금 특정 대법관후보 1명만을 찍어서 그 사람을 대법관을 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에 직권남용 소지가 높고 또 헌법상 제청권의 보장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의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대법관추천위원회라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대법관후보가 각 1명의 대법관 자리를 두고 4명씩 후보가 추천되는 구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3명 이상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4명씩 추천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각각 4명씩 됐습니다.

○**주진우 위원** 4명씩 추천됐는데 보면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노태우 대법관의 후임이 지금 5개월간 공석인데 헌정사에서 이렇게 장기간 공백됐던 것은 건국 초기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몇십 년간 없었던 일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확한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5개월간 공백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4명의 후보군 중에서 협의를 해서 청와대나 대법원에서 뭔가 인사 검증상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논의하는 건 몰라도 아예 그냥 특정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5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됐다고 보는데, 청와대에서 누구 찍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주진우 위원** 그러면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후보를 고집한 것은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도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주진우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기존에 실컷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추천받아서 다 인사 검증하고 한 4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그 4명의 후보를, 절차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후보를 추천하려고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생각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청와대에서 특정한 사람을 찍어 가지고 그 특정 대법관 아니면 절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니까 협의가 지연됐고 법원 입장에서도 도저히 한 명만 찍어서는 제청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사법부 독립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은 사실대로 민주당에서도 따져 묻고 있잖아요. 여야가 같이 따져 묻고 있는데 그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계속 협의를 해 왔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 민주당에서 대법원의 사건이 지연된다고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이나 임명하도록 잔뜩 늘려 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법원 사건이 지연된다고 늘려 놓고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있는데 5개월이나 놔뒀다는 거는 대법원 마비를 방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법원행정처의 고민, 대법원의 고민은 그거 아닙니까. 노태약 후임,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두 자리나 공석이 되면 대법원 자체가 전원합의체도 열기가 어려워지고 대법원 자체가 마비되면서 사건 지연은 더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볼게요. 법원행정처에서 협의할 때 청와대는 노태약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부장판사 요구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주진우 위원**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김민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오영준 헌직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예요. 그것도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러면 대통령 입맛에 맞게 딱딱 해주면 부부간에 한 명은 헌법재판관 시키고 한 명은 대법관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를 4심처럼 민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남편은 헌법재판관이면 그러면 처는 대법관으로서 판결하면 남편은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둘이 숙의하고

논의하면 되는 겁니까? 부부간에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일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 충돌 문제라든지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부부가 현재재판관과 대법관이 되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위원** 장애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4명의 후보군이 다 그래도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딱 김민기 판사만 찍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도 이미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청와대에서 요구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 부분은……

○**주진우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게 이미 청와대에서 딱 특정 판사를 찍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법조계는 물론이고 법원도 물론이고 청와대 주변에 이미 얘기가 다 돌고 있어요. 김예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회장까지 지냈고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하면서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많이 해서 이미 한쪽 특정 진영에 편향됐더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때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특정 판사님에 대한 평가를 드리기는 어렵……

○**주진우 위원** 대법관 제청권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꼭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그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노경필 저장님, 참 손봉기 판사도 그렇고 주진우 위원이 대법관추천위에 올라온 김민기 판사, 김예영 판사 이런 분들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법사위장에서, 그래도 대법관후보추천위까지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사법부 내에서 훌륭한 판사님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거론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특정 판사를 자기와 가까운 판사를 찍어서 대법관으로 제청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하지 않았습시다.

○**김동아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동아 위원** 역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할 때 다 청와대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조

을하고 상의해서 추천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추천한 적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직권남용 이런 얘기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역대 대통령님과 역대 대법원장들은 그거 협의해서 서로 동의를 구하는 게 다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직권남용이 갑자기 왜 나오지요?

○김동아 위원 아니, 대통령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직권남용이라고 아까 주장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그렇게 말씀……

○김동아 위원 다른 위원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보시냐고요.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 관련해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상의하고 논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역대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청와대와 소통해 가면서 대법관 제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만한 임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원만한 임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게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법원장 자기 마음대로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편한 사람 아무나 대법관으로 추천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아,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법추천위만 거치게 되면 다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그게 사법부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까? 그게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임명할 수 있다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마음대로 임명한다고 하지는……

○**김동아 위원** 제 질의가 마음대로 제청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대법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추천되어 온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 분을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자, 추천하신 분 어떤 부분이 적임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손봉기 판사, 대구에서 향판하시고 올라온…… 판결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던데.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판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시면서 법리와……

○**김동아 위원** 인권적인 판결을 한 것도 아니고 크게 이슈되는 판결도 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판결도 한 것도 아니고 별…… 대구에서 그냥 계속 판사하시던 분이던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은 대법원장님이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김동아 위원** 서로 상의하거나 공유하거나 들은 바도 없으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대법원장께서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겠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아 위원** 아니, 처장님께서 청와대와 협의해서 진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임명하고 대법원장에 제청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협의를 하신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절차를 협의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절차를 협의했다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동아 위원** 어떤 절차를 협의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절차를 하면 그걸 서면으로 할지 구두로 할지 그 정도 협의했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뿐만 아니라……

○**김동아 위원**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역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한 것은 제대로 국회 임명동의안,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수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임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상의합니다.

○**김동아 위원** 그게 무슨 절차와 그런 부분만 상의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부분을 상의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하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아 위원** 참, 국회의 동의 절차, 대법원의 임명 절차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대법원장 임명 제청권은 헌법상 권리고 국회 동의권도 권리고 대통령 임명권도 권리고 3개의 권리가 그냥 나열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헌법을 해석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대통령에 임명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얼마든지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고……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면 부결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게 뻔한데 계속 대법원장은 핑퐁처럼 아무나 추천하고 거부하고 추천하고 거부하고 이게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맞는 사법부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시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김동아 위원** 처장님은 최선을 다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을 대리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핑퐁이 됨으로 인해서 대법원이 구성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대법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시면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답변……

○**위원장 서영교**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12월 4일 12시 26분 기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새벽 0시 26분 기사이지요. 법원은 내란, 불법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이전해야 된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는 대법원장 지시로 회의가 있었다, 이 내용 확인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있었습니까, 회의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 국회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명시, 발언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 민정비서관이신 당시 특검보께서도 말씀하신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브리핑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걸 동아일보 기사가 아니라 연합뉴스 기사예요. 그리고 속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법적이라면 재판의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넘겨야 하는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라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이 지시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 지시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누구한테 어디다가 보고를 받았어요, 대법원장 지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가서 안 찾아 보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기사는 오보라고 특검보께서……

○위원장 서영교 연합뉴스 기사인데 무슨 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방패막이가 돼선 안 돼요. 회의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몰랐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회의가 있다고 온 세상이 떠들썩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온 세상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회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는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기가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몰랐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저하고 통화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제가 그날 군사령부에서 전화 여러 번 왔다는 얘기도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통화했고 이 내용도 했는데 몰랐다고 오늘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되지요. 이런 내용을 보고 돌아 보고 반성을 해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오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보라니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합법적이라면 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넘길 수 있는 등에 대한 것들을 논의했습니다라고 자기가 말을 했는데 그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 다시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뒤에 있는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조병구 기조실장님이십니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조병구 기조실장이 천대엽 처장의 답변 그 자리에서 다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예요? 중요한 내용은 워딩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몰라. ‘없었다’, ‘모른다’…… 말이 됩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 정도 되신다면 내란이 있었던 날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지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속기록을 봐도 그런 말씀은 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가지고 오세요. 영상도 가지고 오고요.

뒤에서 이야기해야지요.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순전히 제가 보고받은 내용대로만 말씀드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장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가 말이 됩니까? 온 세상에 보도가 다 나왔고 국감에서 있었던 이야기 기억을 하고,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른 판단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러면 몰라도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손봉기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지요?

○**박형수 위원** 아니, 회의 진행 안 합니까, 회의 진행? 위원장만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위증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형수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게 시간 좀 줘요, 혼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김승원 위원** 사실관계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서영교** 다음,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되고요. 윤석열과 조희대는 한 원죄가 있어요.

다음은 진보당의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솔 위원** 노경필 처장님, 어제 제청 건 전부터 확인을 해 봅시다. 209일 됐지요? 추천위로부터 추천받은 지 209일 됐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손솔 위원**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대법관 제청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고받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추천위가 1월에 구성이 됐는데, 추천이 되었는데 209일 동안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제가 이전 사례를 보니까 100여 일 정도 안 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이었나 하면 탄핵과 대통령선거가 있었을 때입니다. 탄핵과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매우 불안정한 상황일 때 100여 일 정도 신임 대법관이 제청이 안 됐었어요. 올해 있었던 상

황이 그런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을까요? 탄핵과 대통령선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고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혀 할 수 없었던 탄핵과 대통령선거 때도 100여 일 정도 전후로는 정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9일 동안 헌법기관의 공백 상태가 유지된 거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의 제청 건을 떠나서라도 대법원은 지금 이 209일의 공백 상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손술 위원**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 위헌적인 상태를 유지, 방치시킨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유야 어쨌든 그리고 경위가 어쨌든 간에 오랜 기간 제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탄핵,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그 기간에도 올해에 겪었던 일보다 매우 짧았습니다. 209일 동안의 방치 상태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려고 하셨다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요, 한 게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손술 위원** 아이디어였는데 전화하셨잖아요. 전화하신 거면 실행하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손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전화를 한 순간부터 실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아니지요. 생각만 한 건 아니잖아요.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신 거니까 그것은 실행하셨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했던 게 4명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209일 동안이나 후보 추천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청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색 국면을 풀어 보는 차원에서, 풀어 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강구한 방법 중에……

○**손술 위원** 아니, 4명의 추천이 1월에 됐는데 그때 안 된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지금까지 안 됐었습니다.

○**손술 위원** 제가 이례적인 상황인 탄핵과 대통령선거 때도 100여 일이면 된다고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10여 일이면 다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청이 안 된 거예요. 그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방치하지 않았습시다.

○**손술 위원** 후보자 추천을 결국에는 새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4명에서는 안 될 것 같고라고 했는데 손봉기 후보자를 어제는 제청을 하신 거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안은 바로 폐기됐습니다.

○**손술 위원** 어제 제청한 게요, 손봉기 후보자?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요, 아니요. 아까 새로운 안을 꾸리는 부분은 후보자들 중에 상당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바로 폐기가 됐습니다.

- 손술 위원 그러면 새로운 후보추천위를 꾸리려고 전화를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게 정확하게……
- 손술 위원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 손술 위원 기억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9일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 손술 위원 직접 전화하신 것 아니세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직접 전화했습니다.
- 손술 위원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난주 초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손술 위원 지난주에 전화를 하셨어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 손술 위원 새로운 후보자 추천위를 꾸리려고 지난주에 전화를 하셨어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난주 초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 손술 위원 1월 21일에 추천이 사인이 완료가 됐고 3월 3일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 손술 위원 그 이후로도 지금 209일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화를 하신 겁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 손술 위원 지난주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지요, 네 분에게 모두?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모두에게 드렸습니다.
- 손술 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수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신 분도 있고,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바로 폐기될 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 손술 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조직법으로 진행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 절차에 맞게 진행된 것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화까지 하신 거고요. 전화를 했는데 반말이 있었던 거지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동의하지 않으신 거지요.
- 손술 위원 동의하지 않는 게 ‘이것을 원래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한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후보자추천위원회를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었어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두 가지 다였던 것 같습니다.
- 손술 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바로 폐기한, 폐기되고……
- 손술 위원 실행했고 폐기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분한테는 사죄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손술 위원 그분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그분들도 다 이해하시고,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술 위원 이해한다고 말한 분이 있고 강력하게 반발한 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반발한 분도 다시 연락드리고 서로 그 뒤로 계속 연락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죄했고……

○손술 위원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었는데도 추천 이후에 제청을 하지 않고 209일 동안 헌법 공백의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4명에게 전화를 해서 이 법적 절차를 무위로 돌리려고 했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어서 폐기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청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술 위원 왜 대법관 2명을 제청할 수 있는 이 시기까지 시간을 끌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술 위원 처장님 취임한 이후로는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전도 합의가 안 됐고 제가 온 뒤에도 합의가 안 됐고……

○손술 위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묻고 있는데요. 헌법 공백 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이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손술 위원 209일이나 시간을 끌었는데 2명의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책임성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손술 위원 다른 위원님들 기회……

○위원장 서영교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지요, 그렇게 전화한 것은? 전화한 것 잘못하신 거지요, 후보자들에게 전화한 것?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의견을 여쭙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그 후보자들한테 사죄했다면서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마음 상했다면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도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요. 대법원장 심기를 맞추느라고 판단력이 흐려졌고 아주 잘못된 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노경필 처장님, 오늘 이렇게 쪽 보니까 처장님의 태도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 법사위까지만 하더라도 법사위원들의 의견이나 지적들을 경청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또 반박할 게 있으면 굉장히 품격 있게 반박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같은 입장을 취하고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싸워 보자, 이미 대법원장이 일 저질렀으니, 우리 한배 탔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 장수가 돼서 나오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서면 제청을 어제 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서면 제청하기 전에 혹시 처장님이랑 상의했나요, 서면 제청한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누구……

○**김용민 위원** 처장님이랑……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누구랑……

○**김용민 위원** 대법원장이랑.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동의하셨어요, 본인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말입니까?

○**김용민 위원** 예, 서면 제청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동의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건가요 아니면 처장님이 낸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요. 그것은 요구하면 되는 거고 서면 제청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그러면 언제 요구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전부터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김용민 위원** 하지만 그래도 대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율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제 질문은 서면 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서면 제청을 하자라는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처장님의 아이디어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이디어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둘 다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래 서면 제청입니다. 그 전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다 보내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구두 제청 안 하고 서면 제청하셨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만나시지를 못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청할 때도 만난 뒤에, 협의된 뒤에도 서면 제청한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왜 서면 제청으로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래 그렇게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기록도 안 보고 재판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기록 봤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게 중요한 재판을 기록 안 봤잖아요. 기록 7만 페이지 복사된 것 봤습니까, 문서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문서로만 아니라 전산으로 봤습니다.

○**김용민 위원** 전산으로 다 읽었냐고요, 7만 페이지를?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꼭 필요한, 유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봤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것만 발췌해서 봤으니까 무죄의 증거는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함부로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떻게 유죄……

○**김용민 위원** 처음부터 유죄로 딱 정해 놓고 달려갔다는 자백을 지금 하신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김용민 위원** 지금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판결하는 데 충분하게 봤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김용민 위원** 봐요, 오늘 장군이 돼서 오셨어요, 진짜로.

또 질문드려 볼게요. 아까 전화했다고 했는데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후보 네 분 다 통화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다 통화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손봉기 후보자에게도 ‘당신 추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손봉기 후보자 당신을 추천할게’ 이렇게 얘기했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윤성식 후보자에게도 전화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윤석열 내란재판 진행 중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윤성식 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윤석열 재판하고 있는 내란재판의 재판장한테 ‘당신 대법관 추천하는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겠다’ 전화하는 건 압박 아닌가요? 엄청난 압박 같은데요.

게다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조희대가? 내란 재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 않습니까? ‘내란재판 윤성식 당신이 무슨 판결을 내려도 나는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재판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을 보여 줬고 또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재판 중인 재판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대법관 추천 제로로 만들겠다.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 전화 한 겁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입니까? 이게 재판을 제대로 하라고 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전화하지 않았습시다.

○**김용민 위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윤성식 부장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지요. 지금 재판 개입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한 것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재판 개입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하지 않았습시다.

○**김용민 위원** 조희대는 전원합의체 회부했고 지금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무슨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눈에 뵈히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막 나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의 종기는 12월 4일까지다. 12월 13일까지는 비상계엄 시기가 아니다’라고 ‘내란의 시기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잘라 버리려고 하겠지요. 내란을 이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을 조희대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 대법관 추천된 윤성식에게 법원행정처 처장은 전화해서 ‘당신 추천된 것 없던 일로 하겠다’ 전화를 합니다. 이게 지금 재판 개입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전화하지 않았습시다.

○**김용민 위원** 얼마나 큰 압박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제청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좀 나오기는 했지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없습니다. 보세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72년 유신헌법에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입법부·사법부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입법부를 마음대로 장악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

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저때 처음 넣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서 사실상 판사 전체를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겠다고 해서 입법부·사법부 장악 시도로 들어갔던 규정이에요. 이것을 사법부의 독립의 역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된 오욕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사무처장입니다.

○**김용민 위원** 저는 지금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이 사유로 탄핵하나? 저도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시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그리고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함부로 해서 국민주권을 침해한 죄 이런 것들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덕수 탄핵 그리고 이상민 탄핵, 박성재 탄핵 이런 것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란죄에서 중죄,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로 다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판단이 틀렸어요. 그 틀린 판단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한 말씀하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역시 부차적인 사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 이전에 제 개인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저는 현재가 과거 탄핵을 함부로 기각했던 것, 이 내란 국면에서 함부로 기각했던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이 없으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그 점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그럴 사안이라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 처장님, 저희가 박성재를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의결해서 보냈거든요. 기각이 됐어요. 한덕수도 탄핵해서 보냈는데 기각이 되고요 이상민도 탄핵해서 보냈는데 기각이 됐어요. 왜? 위헌하고 위법했다, 불법 비상계엄의 주요임무종사자였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보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끝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년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덕수 15년형 그리고 이상민 9년,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라의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까지 받는 사람들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감행했고 그리고 군, 경찰 모두를 동원해서 헌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처벌받았던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때

헌법재판소에는 안 계셨지만, 그런데 끝내 결과는 우리가 탄핵한 게 옳았다. 이 말인 거지요.

○김태규 위원 왜 발언마다 감평을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왜 발언마다 감평을 하시냐고요!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를 정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의사말 진행을 하시고 본인 의견은 시간 걸고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이 이제 돼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의사를 정리할 의무가 있어요.

○김태규 위원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최민희 위원장도 7분 넣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최민희 위원장은 거기서 한 거고 저하고 달라요. 의사를 정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같은 국회 안에서 왜 다르니까, 그게? 지금 순수하게 본인 의견만 얘기하시잖아요, 절차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박균택 위원 김태규 위원님, 그러지 마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박성재가 25년 받은 게 나의 의견이에요? 법이 25년으로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선고?

○김태규 위원 아니, 지금 한 번 끝날 때마다 제가 숨이 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2~3분씩 하고 나면.

○김용민 위원 위원님, 손가락질은 하지 마십시오, 표현하시더라도.

○위원장 서영교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이 할 때 웃거나 그러지도 마세요.

○김태규 위원 제발 절차 진행 제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하지요.

○위원장 서영교 질의하세요.

○김태규 위원 행정처장님, 힘드시지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봐서 압니다. 제가 그때 방통위 위원장 권한대행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각 부처 상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상의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님 위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사실상 서영교 위원장이 앉아 계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삼권분립 왜 망가졌습니까?

○박지원 위원 윤석열 때는 누구예요?

○김태규 위원 왜 망가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박지원 위원 윤석열 때는 누구야?

○김태규 위원 그만하시지요. 제 발언시간 아십니까?

법원의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참 비겁하십니다. 검찰이 망가져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지요. 법원의 판사들 어떻습니까? 사소하게 재판 진행 좀 빨리하라고 한다고 해서 재판권 침해라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대법원장이 국회에 불려 나오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판사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분립은, 사법권의 독립은 스스로 지켜 내는 겁니다.

○박지원 위원 잘못된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지, 뭐.

○김태규 위원 그만하시지요.

이 방에서 대법원장의 일에 대해서 ‘행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정치행위’, ‘사법정권’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님이 솔직히 말하면, 딸각발이 판사라는 표현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저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잘 못 하시지요. 아마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하셨으면 재판 마치셨어야지요. 유죄인데 그것을 왜 파기환송합니까? 자판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했지요.

○박균택 위원 김태규 위원님 발언 조심하십시오. 예의를 지켜 가면서 합시다.

○김태규 위원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 발언 시간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박균택 위원 예의를 지켜 가면서 합시다! 예의를 지켜서 발언을 하세요!

○김동아 위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김민전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김태규 위원 왜 끼어듭니까? 이것 지금 멈춰 주세요.

○김동아 위원 멈추지 마세요.

○김민전 위원 누가 예의를 안 지켰는데.

○박균택 위원 예의를 지켜 가면서 해요.

○김태규 위원 예의는 그쪽에서 많이 안 지켰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제 발언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직권남용 얘기하지요. 어찌 보면요 전원부 회부하는 것은 소송지휘권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이 전원협의체로 회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어찌 보면 소송지휘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조차도 왜 그렇게 회부를 했느냐 그리고 직권남용이다 그러면서 탄핵을 다시 거론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청권 말씀하셨는데요. 제청권은 분명히 대법원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제청권이 예전에는 2014년도 이전에는 대법원장 혼자서 일방적으로 다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관제청위원회가 생겼지요. 대법관후보제청위원회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리고 대법관후보제청위원회는 그 안에 보면, 구성 분자 중에 보면 대법관 아닌 법관 1명이 들어 있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이 사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체적으로 추천을 하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그 현장에는 법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묘사해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밖에서 온 외부위원들은 법원 속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법관 아닌 법관 1명의 영향력이나 발언권이 굉장히 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려집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법관후보들이 정해집시다. 맞지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대단한 권한이라도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해 준 그 범위 안에서 소극적으로 선택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원래 제청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찾고 발견해서 선택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권한조차 다 뺏아 버리고 선택할 권한조차도 뺏고 결국에는 임명권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이번 사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대법원장님께서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알기에는 대법원장님 스타일상이라도 안 나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법원 속사정이야 법원의 인사 돌아가는 속사정을 조금만 알면 이런 무지한 발언들, 무지한 질문들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무지한 질문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 행정처장님 입장하시니까 행정처장님께서 좀 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왜곡죄, 대법원 대법관 수 늘리기, 재판소원 이런 것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게 국회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는데도 그대로 무기력하게 수수방관하고 지내 왔던 것이 법원의 현실이고 법원의 내부 구성 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이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께서도 아마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는 마지막으랴도 사법부를 좀 지켜 보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뭔가 한마디쯤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김태규 위원** 달리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처장님께 여쭙볼게요.

법에 보면, 판사가 한 분만 들어갑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임대법관 판사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판사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대법관이고 일반판사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김한규 위원** 대법관은 판사하고 다른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꼭 그렇게까지……

○**김한규 위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제 자유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 있고 대법원장이 학식이나 덕망 있는 변호사 자격 갖지 않은 사람도 3명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실제로 거기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관도 또 들어 있고.

언론 기사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제청 대법관후보에 특정 성향 인물이 포함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을 위해 제청이 절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청권에 임명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점에는 다수 헌법학자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이것 2023년 6월 2일 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었고요. 당시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려고 언론에 이미 나와 있던 사람이 두 분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일주일 후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후보자로 제청이 됐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까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엮포를 놓은 겁니다. 제청을 해도 우리 임명권이 더 우선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청하지 않겠다 엮포를 놓은 거지요.

대법원은 이렇게 대통령이 엮포를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취향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제청하고 대통령실이 이견을 제시하면 그냥 무시하고 서면으로 제청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왜 2023년 당시에 대법원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언론에다 인터뷰까지 하는데 아무 말도 못 했습니까? 왜 지금은 달리합니까?

대통령과 대법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협의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대법원장이 강하게 요구하면 대법원장이 요구하는 사람 뜻을 따르는 적도 있었을 겁니다. 역대 그동안 협의는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끝내는 합의가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한규 위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제청하시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임명권자와 동의기관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파국이지요. 저희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의 뜻이 다르다는 게 온 천하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임명을 동의합니까? 파국이지요. 못 합니다.

이런 거 예상 못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상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상하고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동안 계속 제청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또 그 이후로……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국회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냥 인사청문 절차 하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제청했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반대했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 의도로 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더 이상 제청을……

○**김한규 위원** 대법원장이 제청을 단독으로 하면 이번에 후보가 되신 분 대법관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구조상 여당이 대통령이 반대하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더 이상 제청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대통령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이상—이번에 4명이었지요—그 안에서 대법원장과 다른 의견을 갖고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은 이분인데 우리는 이 4명 중에서 다른 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든지 여하튼 다른 이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법원장이 받으면 안 되는 일인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대법……

○**김한규 위원** 완전히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추천해 주세요. 4명 안에 꼭 넣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가져온 사람들 중에 ‘나는 다른 사람이 더 좋은데, 저희는 이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못 따릅니까? 이렇게 파국으로 갈 정도로 대법원장이 본인의 의견을 고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분은 결국 후보자로 추천됐다고만 되고 결국은 대법관이 안 될 텐데요.

이건 대법원장이 그냥 내 고집을, 나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다, 굴하지 않은 나의 선포성을 우리 법원 식구들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법원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식이 계속 유지될 텐데.

그게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고 법원행정처장님 동의하신 겁

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신 사안이라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냥 국민 갈등만 조장되고 대법원장의 단독 제청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관은 공식인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절대 대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혹 보내자는 얘기를 행정처장님이 제안하셨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같이 협의 중에 협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뭘 누구랑 협의해서 돼요?

서면으로 혹 보내자는 것 법원행정처장님 제안이구먼요.

○**김태규 위원** 또 주석 다세요? 또 주석 달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물론 제안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 제안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보내자는 게 대법원장 제안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제안이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장이 한 거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민정하고 협의했다며.

○**김태규 위원** 왜 유도신문을 하고 그러세요, 지금.

○**위원장 서영교** 서면으로 보내는 것을 누가 제안한 거냐고요.

○**김민전 위원** 민정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래 서면으로 보냅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이 보낸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래 서면으로 보냅니다.

○**위원장 서영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 원래 서면으로……

○**위원장 서영교** 협의해서, 합의해서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서면으로 혹 보냈고, 그거 법원행정처장 제안이구먼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나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게……

- 위원장 서영교 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법원행정처장 제안이구먼.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
- 위원장 서영교 아니면 대법원장 제안이고. 둘 중에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라고요.
- 김태규 위원 뭐 하십니까? 왜 답변을 강요하세요!
- 박형수 위원 아니, 그걸 왜 위원장이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그렇게 물어요?
-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이 기억 안 나면 대법원장이지. 위원장이 그것도 몰라요?
-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대법원장이군요.
- 김태규 위원 뭐 하십니까?
- 박지원 위원 뭐 하긴요. 누가 서면 보내자고 했나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 박형수 위원 아니, 아까 민정수석하고 협의했다며요.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똑바로 대답해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박형수 위원 똑바로 다시 얘기해 봐요.
- 김태규 위원 민정수석하고 했으면 뭐……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입니다.
- 김민전 위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 박형수 위원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했다잖아!
- 위원장 서영교 뭘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서면 제정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 김태규 위원 왜 또 거짓말이에요?
- 박형수 위원 뭘 거짓말……
- 거짓말이면 위증죄로 처벌해요. 고발해.
- 위원장 서영교 거짓말하지 마세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거짓말하지 마세요.
-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은 거짓말 안 해요. 본인이 안 했으면 대법원장이 한 거지. 위원장이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 김민전 위원 민정이 했다잖아요, 민정이!
- 박형수 위원 아니, 민정수석하고 협의했다는 말 못 들으셨습니까? 민정수석하고 협의 했다잖아요.
-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손봉기를 서면으로 내겠다고 협의해서 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마지막에, 마지막 날 통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통보한 거잖아요.
- 김민전 위원 만날 기회를 안 줘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 김태규 위원 맞네. 다 나왔네. 답 다 나왔네.
-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통보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여지껏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고서는 통보한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니까 마지막 날……

○위원장 서영교 법관이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요?

○김민전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있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 서영교 당연하지요. 통보한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모든 곳에 통보라고 나와 있는데.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을 거짓말하고 그래.

○박형수 위원 서면으로 제청이지 왜 통보야. 법률 용어 좀 써요. 서면 제청이지.

○위원장 서영교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님 안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박균택 위원님 하셨고, 박은정 위원님.

○박균택 위원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 박균택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처장님,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동등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청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관계다, 위상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청권은 제청이고……

○박균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청권자가 임명을 하는 거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쨌든지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면 후보를 다시 정해야 됩니다.

○박균택 위원 4명 중에 다른 사람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4명 중에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절차는 끝나서 새로운 절차를 꾸려야 될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후보가 4명인데 그중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제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임명권자가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3명은 다 필요가 없고 다시 새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이 제청한 분에 대해서……

○박균택 위원 아니,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임명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균택 위원 그것은 대법원이 사법의 아성을 쌓고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원수이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줌으로써 어떤 민주적 통제를 가하자, 민주적 요소를 가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지요? 그 취지가 어쨌든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줌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어떤 사법부 구성에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는 이유는 뭡까요?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면 되는데 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는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여러 헌법 교과서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아무나 막 데려다가 대법관을 시키지는 말라는 의미의 절차적인 견제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균택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구성된 그 법관들 중에, 그 외에 아무나 임명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임명하려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당연히 인정합니다.

○박균택 위원 거기서 추천했던 4명의 대법관 후보들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자격이 부족하거나 함량 미달이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거나 이런 법관이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자, 그러면 임명권자가 그중에 다른 사람을 원한다, 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중에 대통령의 의사에 맞는 사람을 제청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제청권이 임명권과 동등한 위상의 개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김기표 위원 맞는 말이잖아. 옳은 소리만 하네.

○박형수 위원 그게 뭐가 옳아. 그러면 제청권은 뭐 하려고 있냐.

○**김기표 위원** 맞는 소리야. 어차피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며.

○**박균택 위원** 지금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고 그 제청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것이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해 버리면 대통령은 임명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들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박균택 위원** 아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대통령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했으면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로 제청이 이루어졌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식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청권이 임명권을 압도하는 겁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헌법 규정은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반대로 대통령님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서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그 제청권이 바르게 행사되게 하기 위해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고 거기서 훌륭한 법관들 네 분이 후보가 됐던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고 구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서면 통보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헌법정신에 반하게 어떤 대법원의 아성을 쌓겠다는 태도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법의 주인인 것으로 아는 것 같아요. 사법의 주인은 국민, 사법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과연 대법원장을 위한 사법부,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제청하겠다. 내가 제청한 사람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해 보세요.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알아서 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님의 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지금 뺏으려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작년 선거법 재판 시에는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까지 직접 뽑겠다고,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나섰던 분 아닙니까?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 선출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반헌법적인 정서를 가진 분 같고 이런 분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대법원장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 그게 결코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늘 취해 왔던 사람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저는 보면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되면 민주당 위원들의 사퇴 주장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와서 이런 지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김호철 감사원장님, 1월에 취임하시고 지금 한 8개월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전 사무총장도 구속이 되고 조직이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2025회계연도 특수활동비 6억 4972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요. 감사원 올해 2월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셨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전격적으로 중단하시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감사원장님께서 잘 좀 살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위원님 취지를 살펴서 가능하겠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이 됐는데요. 혹시 그 공소장을 보셨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아직 공소장은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제가 공소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감사원장님께서 업무하시는 데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호 피고인은 2022년 6월 15일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수시로 대통령실과 교류를 했고요. 감사원 내부에서 본인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구성원들을 타이거파로 분류하면서 그중에서도 더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쥔 타이거라고 공공연하게 부르는 지경으로 감사원에서 독선적이고 매우 잘못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 당시 관저 이전 감사 방해로 구속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국민감사청구위원회 실시 결정이 나면 감사를 하긴 할 텐데, 분위기상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털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 것이 이번 공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 감사원 조직 내부의 기강이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진행이 됐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4월 달에 국정조사 후속 TF가 발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해 감사하고 통계 감사에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특별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감사원 자체적으로 조직기강을 확립하시고 그리고 후속 TF에서도 제대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된 감사원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렇게 감사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박은정 위원** 손인혁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사무처장입니다.

○**박은정 위원** 재판소원 제도가 신설이 됐고 사건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위헌소송이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들이 지금 제가 확인했더니 4명이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같은 걸 현재에다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사와 소추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제가 확인했더니 1994헌바2호, 2007헌마1468호, 2017헌바196호, 2020헌마264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그것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반복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자신의 직분을 잊어 버리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위헌소송을 하는 것,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헌법소송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의견을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상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입장은 법률상 권한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노경필 처장님, 이번에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업무전산화사업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영상재판 관련해서요. 이게 개선·확충사업 예산이 있는데 내부계획은 2025년 1월에 수립이 됐는데 실제 계약일이 한 243일이나 걸려 가지고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영상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렇지만 매우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또 개선·확충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200일이나 넘게 계약이 진행이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처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지연이 된 모양입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법원에서 영상재판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도 많이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고…… 현재 아직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영상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다면 이것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실제로 보니까 매달 한 몇천 건 정도는 이 영상재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이 재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 차원에서 개선 작업을 되도록 빨리 진행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민주당 위원들이 예정했던 오늘 상임위원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마도 대법관 제청을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대법원을 공격하고 대법원장을 공격해서 이렇게 자기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직무유기 하고 있는 대법원장 문제가 있고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법관 제청을 하니까 이제는 왜 대법관 제청을 니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 상임위원회를 대하는 기조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굴욕을 감수하고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강하게 아니라고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태도로 침묵하고 ‘이건 인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칼이 돼서 대법원으로, 법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 못한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동안에 그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 허물어지는 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원행정처에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걸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람을 제청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이 사람을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삼자인 이 사람은 어떠냐? 그렇게 협의하고 협의했더니 뭐가 되고 안 되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인사 사안이라고 법원이 ‘아이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무기로 쓰입니다.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제대로 좀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와대에서 어떤 인물을, 노태약 대법관 후보로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죄송합니다. 인사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사법부 독립이 허물어지고…… 그거는 대법관 몇 사람, 대법원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탄핵당하고 대법관이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려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는 거예요. 수많은 법관들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걸 지켜 주려고 지금 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인사라고, 뭐라서 답을 못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대법원이 지켜집니까? 그렇게 해서 법원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누가 지켜 줘니까?

저는 이제는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께 판단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법원행정처장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제청권·동의권·임명권 다 따로 규정을 해 놔서요, 우리 헌법에. 다 이렇게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은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민주당 위원들 얘기하듯이 임명권이 최종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임명권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동의권은 왜 필요하고 국회 동의는 왜 필요합니까? 제청권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청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서 그게 그대로 결정된다 그러면 동의권·임명권 필요 없지요. 왜 이렇게 규정을 해 놔느냐? 제청권을 행사할 때는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말로 제대로 재판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청해라. 그 뒤에는, 당신들 뒤에는 동의권도 있고 동의권을 가진 국회도 있고 최종임명권을 가진 대통령도 있다, 그게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따로따로 규정해 놓은 헌법의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제는 정말로 대법원이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제는 그 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해서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이 뭐니까?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했으니, 그러면 제청권 하는 대로 임명해야 되는 거냐, 동의권 그대로 행사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당인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뜻과 다른 인사를 제청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동의 못 해 주겠다고 그래요.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이게 이 한 사안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20명의 대법관을 다시 임명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게 관례가 돼 가지고 그 20명을 다 대통령 뜻에 따라서 하라라는 게 이 메시지예요, 안 하면 동의 안 해 주겠다, 임명 안 하겠다.

이게 도대체 삼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대법관 제청할 때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전처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협의가 안 됐다는 그 부분을 다시 물어볼게요.

협의를 안 해서, 되면 제청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니까? 대면 제청하려고 청와대에다가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안 잡아 줘서 그래서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아까 다른 분들이 물어봤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답하려고 하다가 끊긴 적이 있어요. 지금 충분히 민정수석하고 협의한 단계부터 다 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면담 일정에 대한 협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누구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민정수석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법원행정처장하고 직접?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왜 그렇게 얘기 못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 물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답을 해 보세요. 내가, 법원행정처장이 민정수석하고 언제 만나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을 해 봐요, 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박형수 위원** 안 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형수 위원** 뭐가 겁이 나서 그렇게 설명을 못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의 경위에 따라서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얘기를 왜 못 해요? 보지도 않은 나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직접 겪은 당사자가 왜 그 말을 못 합니까?

(김승원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통지에 의한 제청에 의해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와 그에 따른 질의가 굉장히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저도 사법부의 일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게, 사법부는 사과와 반성은 없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기 힘들니까? 예컨대 12월 3일 날 불법계엄, 내란이 일어났을 때 저도 알고 아마 여기 처장님도 아실 거고 모든 법조인들이 다 아는 12월 3일이 전시·사

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습니까? 다 일상생활 하고 저도 잠든 날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군사 병력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필요가 있는 날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 다 알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 뭐 했습니까? 그때 사법부 회의 개최해서, 저도 그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계엄이 정당했다면 군사법원으로 재판을 이양해야 될 절차 과정을 논의했었다’, 파견 요청에 대해서도 한 명을 지목한 것 같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12월 3일과 같은 그런 밤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므로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불상사가 더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조기에 정리가 됐을 텐데 침묵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12월 3일 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국민에 대한 사죄도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그다음에 5월 1일 날 갑자기 민주당 대선후보를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7일 만인가요, 9일 만에 날려 버리고 겨우겨우 항소심에서 재판이 중지됨으로써 일단락은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죄가 없습니다, 오로지 7만 페이지 기록을 미리 읽어 보고 다 검토했다는 얘기만 할 뿐. 그러면 로그인 기록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법부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뿐만 아니라 분노하기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어쨌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하나둘씩 바로잡혀 가는 와중에 대법관 후임 제청을 또 209일이나 미뤄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더니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서면통지를 해 버리고 국회에서 부결시키든 대법원이 반력을 해서 거부를 시키든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면 새판을 짜겠다, 첫 추천회의가 추천한 4명 다 무효화시키고 새판을 짜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대법관 후임을 왜 그렇게 제청 안 했느냐? 그 앞에 한 걸 보면 김건희 씨 사건 선고일 잡아 놓고 갑자기 취소를 시킨 다음에 전원합의체로 또 회부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선고일 잡아 놓고 갑자기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없잖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한덕수, 이상민 내란죄로 1심, 2심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만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법률에서 3개월 안에 재판을 하라고…… 1심, 2심은 어쨌든 그 기한 지키려고 열심히 재판해서 대법원에 올렸더니 3개월 지나기 이틀을 남겨 두고 또 전원합의체로 돌려 버리고 9일 남겨 두고 또 전원합의체 돌려 버리고…… 그런데 그 주심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니 5월 1일 날 조희대의 난이라고 하는 사법 쿠데타 날 끝까지 무죄를 얘기했던 이홍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사건을 또 전원합의체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봐도 그렇고 국민이 봐도 그렇고……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재판장인 전원합의체로 한덕수·이상민 사건을 갖고 와서 주심인 오경미·이홍구 대법관과 다르게 뭔가 또 법리를 개발해 갖고 이걸 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다시는, 우리나라 역사에 없어져야 될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엄정하게 처벌받고 신속하게 처벌받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세워야 될 이때에 다시 전합으로 돌려서 또 뭘 꿑꿑이속이 있는 것 아

니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장님도 말했듯이 원죄가 있고 죄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사죄도 없었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전원합의체로 돌리면서 그 후임을 자기 마음대로 제청을 하겠다고 하고 또 후임도 보니까 고향 지역 후배예요, 근무 인연도 두 번씩이나 있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사법부 안 그랬잖아요. 정말 선비처럼 어쨌건 세상과는 구별되게 독립되어서 자기 처신을 더 유의하고 신중하게 하고 자중자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해 보라는 식으로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저는 정말 답답하기……

선택을 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정을 하실 것인지. 사법부 구성원들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님들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법관회의에서도 이 부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는 제청권 제청을 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고 그 공은 다 국회나 대통령실로 넘어간 것이라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하기에는 너무 사태가 커져 버렸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현명한 판단 또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 맞지요?

○김태규 위원 이제 좀 웃깁니다.

○위원장 서영교 웃지 마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불법 비상계엄 공포할 때 불법이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이게 불법이다, 비상계엄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생각했지요?

대법관이시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도를 빼고는 전부가 이게 조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관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내란이지요? 내란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내란인지 여부는 재판 중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재판에서 지금까지 판결로는 내란으로 판결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1·2심 판결은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란이라고 봅니까? 판단 못 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한 일이어서.

○위원장 서영교 판단 못 하겠지요? 그러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이라고 판단 못 한다는 거지요? 내란이라고 말 못 한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사건이어서, 사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개인적으로는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 자리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개인적으로는 어떠냐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추후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볼 때 그 답변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전 대법원 입장. 채널A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 보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다음 조선일보 읽어 보세요.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 회의 진행’.

회의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까 다 모였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회의라고 나오고 입장이라고 나오고 관할 검토라고 나오는데 대법관인 사람이, 법원행정처장 사람이 회의했다고 하는데 ‘모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바꾸면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말 바꾼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회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날 모여서 회의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갑자기 모였다고 말을 바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중앙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써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연합뉴스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써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천대엽 처장이 한 발언 띄워 봐 주세요.

저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보세요.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 해야 할 조치가 있다’. 당장 그 시간에 노경필 대법관도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한참 뒤에도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 해야 할 조치가 있고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제 질문이에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날 회의했어요. 회의하고 ‘구치소에 자리가 있는지 찾아봐라’,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 잡아가면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날을 부정했다가 다 들통이 난 거지요. 그래서 25년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왜 당신들은 회의를 했냐, 법무부처럼’라고 물으니 우리는 상당히 시급했어요.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래서 이것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계엄에 따라 해야 될 조치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대법원장의 지시 그리고 대법원장의 지시가 아니면 법원행정처장 지시, 이때 회의를 시작한 사람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모두 다 공범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답변 못 해요. 살펴보겠다고…… 위헌이란 말 한마디도 못 해요. 여러분은 법무부처럼 똑같이 가장 중요한 곳이 군이었고 국정원이었고 법무부였고 그리고 법원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임명받을 때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충성 맹세를 했고 그날 5월……

일정표 한번 띄워 봐 주세요.

노경필 대법관은 종이 기록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종이도 보고 전산으로도 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날은 4월 22일이에요. 전산으로 보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 스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국회 내용은, 전자소송을 민사로는 하지만 형사소송을 전자로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 스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스캔해서 봤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봤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얼마나 봤습니까? 몇 페이지나 되던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필요한 부분만 봤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 놓고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면 안 봤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교 몇 페이지나 되던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하고 나왔군요. 몇 페이지가 되는지도 못 보고 나왔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7만 페이지예요. 책으로 하면 350권짜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사법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법관이 새로 오셨으면,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오셨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윤석열은 감옥 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사법쿠데타를 꿈꾸는 겁니다.

4명의 대법관후보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4명의 대법관후보가 추천되었으면 그중에 대통령과 함께 협의해서 대통령이 함께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추천하고 제청하면 되지 왜 제청하지 않지요? 그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청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대법원장은 그 사람을 제청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4명에게 전부 다 전화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4명 다. 손봉기는 사퇴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개별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답변해야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죄송합니다만 각자 어떤 태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전화한 것은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법원행정처장 자격이 없어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법원행정처장 자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대법관을 추천하는데 추천된 대법관을 제청해서 이제 대법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퇴할 용의가 있냐고 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까 말도 똑같아요. 회의가 있었냐고 했더니 회의 없었다고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회의 없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다음에는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서야 추궁하니 회의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전자문서로 다 보았다고 해서 그러면 몇 페이지나 되냐고 물었더니 바로 말을 바꿔서 골라서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게 어떻게 말을 바꾼 겁니까?

○위원장 서영교 몇 페이지나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도 없이 나왔는데……

○김태규 위원 그만합시다.

○위원장 서영교 전자문서로 자기가 로그인해서 보면 몇 만 페이지가 되는지 확인돼야 되는데 그것을 봤습니까?

○김민전 위원 시간 지키세요.

○박형수 위원 끝났으면서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로그인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볼 수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시간 안 지키세요?

○김태규 위원 가서 재판하세요, 그냥.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 행정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태규 위원 그러면 미리 가르쳐 주든가, 누구를 찍으라고. 진짜 너무하네.

○김승원 위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구랑 무슨 협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손아귀에 드는, 자기하고 대구에서 같이 판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을 손아귀에 넣어 놓고 하려고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이재명 파기환송 하듯이 하려고 그렇게 대법관을 제청한 일은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일이고 그것을 같이 동조한 공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를 잠깐 할까요?

○김승원 위원 예, 정회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

○위원장 서영교 주질의의를 마쳤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소관기관의 결산에 대한 서면질의를 오늘 오후,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을지연습 관련 회의 주제로 인해 위원장이 간사들과 합의하여 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아직 오고 있는 중이라, 차관보이십니까?

○국방부차관보 원종대 원종대 차관보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원종대 차관보께서 대리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행정처장님, 보니까 손봉기 후보자는 고향이 부산, 김성수 후보자는 전남 함평, 손봉기 후보자는 지역법관 그다음에 김성수 후보자는 경영교류, 맞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손봉기 후보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데 법원장을 거치신 분 그리고 김성수 후보자는 고등부장, 그러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리고 김성수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맞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국제……

○김태규 위원 인권법연구회 회원.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본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김성수 동명이인이 두 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동명이인이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래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원 인사를 할 때 다소간에 지역이나 아니면 성분 이런 부분들도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고려가 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려해서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지역을 얘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왜 이렇게 한쪽 지역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한쪽 지역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청·동의·임명은 선후가 있을 수 있고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힘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각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청할 사람은 제청하면 됩니다. 제청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동의될 거라고 장담도 못 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명될 거라고 장담 못 합니다. 제청할 사람은 제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청을 하셨지요. 그리고 동의나 아니면 임명 과정에서 그 사람이 탈락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가끔 있는 일입니다.

○김태규 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문제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명권자 심증을 해아려서 미리 움직일 것이지 내가 왜 임명 여부에 대해서 고민까지 하게 만드느냐, 저는 그리 읽힙니다. 어떠십니까? 대통령은 그냥 본인 권한 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명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알아서 임명할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 읽히는데 처장님은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요 왜 자꾸 이렇게 처장님한테 불편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 조직 내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관 자신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법원 안에서 법관 스스로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에는 적어도 법원 밖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원 안의 내부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것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는 나라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오고부터는 법원 안의 내부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은 여전히 어느 정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너무 처참하게, 너무 가열차게, 어떤 표현을 할까요? 제가 마땅한 수식어가 안 떠오를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법왜곡죄 만들었지요. 앞서도 말했지만 대법관 수 한정 없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 이렇게 됐지요. 그렇지요? 법원 안의 고등부장제도 폐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법관들이 연공서열대로 움직이는 식으로 됐지요. 왜냐하면 승진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법관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는 그것 대체수단으로 대법관 수를 늘린 거라고 봅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니까 비록 그 이전의 고등부장만큼 숫자는 안 되지만 고등부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던 법관들이 이제는 좀 잘하면 대법관까지 내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관들의 마음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리고 임명권자가 자기 임명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으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려면 제청권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달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얘기를 좀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감사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처음 보는 대법원장의 행동을 보고 그다음에 난생 처음으로 저렇게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법원장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보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대법원이 얘기하지만 오히려 너무나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법부 종사자들, 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존심을 잃게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

니까?

사법부는 국민의 것이지요. 대법원장 개인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왜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법부가…… 흔들리는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질의도 하는 것이고 질책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시쳇말로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만 껍판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껍판. 행정처장님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의, 임명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임명 안 될 거다. 그런데 던져 놔주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기표 위원** 아니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임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협의 안 되고 조율 안 됐으니 이것 던져 놔도 결국 임명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던져 놓는 건 껍판 친 거지요. ‘그래, 나는 모르겠고, 협의고 뭐고 모르겠고 알아서 해라’, 이게 대법원장이 할 일입니까? 뻔히 임명 안 될 것을 왜 던져 놓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청된 4명 외에서 지금 하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4명 중에 의견이 지금 조율이 안 돼 가지고 하는 것을 굳이 어떤 사람 꼭 해야 되겠다 서로 무슨 기싸움하듯이 해 가지고, 만약에 저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들어 봐서. 그런데 가사 청와대에서 누구를 좀 희망했다고 칩시다. 그게 그 4명 중에 1명일 텐데 대법관추천위원회 후보 추천해서 올라온 그 4명 중의 1명을 청와대에서 고집한 것을, 고집했다면 그게 안 된다고 대법원장이 해서 이렇게 껍판을 치는 게 맞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불안정이 있을 때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안정적이어야 하는 대법원이 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까, 오늘만 해도?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제청권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 개정해서 제청권 없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의회와 대통령, 동의권과 임명권 2개 주면 되지 서로 협의 잘하라고 그것을 믿고 두었던 규정 제청권, 임명권 이것 굳이 둘 필요 있나?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장이 한 제청권이 임명권을 형해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왜 제청권을 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죄의 말씀을 아까 드렸다고 했는데, 전화해 놓고 그냥 의견 물은 거면 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까, 잘못된 것도 없는데? 행정처장님 잘못된 것 없다고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죄하셨다면서요, 전화한 사람한테? 본인이 생각해도, 처장님이 생각해도 잘못했으니까 사죄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문제될까 봐. 나중에 전화 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거 이런 것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뻔합니다. 그게 일종의 조리 같은 겁니다.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말씀이라고 해서 했겠지요.

저는 이 4명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후보자를 유지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천거된 사람이 국민이 천거해 가지고 된 사람이 39명이었어요. 여러 명 중에서 39명이 ‘내가 그러면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국민 검증해 봐도 좋습니다’라고 동의한 사람이 39명이었어요. 그 4명은 그 39명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미 그 4명은 ‘나 대법관후보 한번 돼 보고 싶어요’라고 결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왜 의사를 다시 묻습니까? 이미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을 왜 다시 물어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어렵게 국민의 여론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대법원장이 다 임명한 10명 중에 대법원장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 6명이 임명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4명의 당연직이고. 그런 상태, 그럴 거면 애초에 걸러내지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정말 누가 나 탄핵해 보라고 함정으로 빠트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4명한테 물어봐 가지고 동의 안 하니까 어차피 임명 안 될 사람 추천해 가지고 임명 안 되게 해서 다시 원래 의도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껍판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목적 달성을 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결국 우리 뜻대로 됐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게 법원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법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껍판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데요. 저는 껍판이 아니라 억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만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 제청을 했느냐, 서면 제출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나 달라고 해도 안 만나 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왜 서면 제출을 했느냐, 안 하면 이것 직무상 직무유기로 탄핵하겠다, 이것 이미 8월 7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니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껍판이 아니라 억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부가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을 같이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법적으로야 제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기 다른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민전 위원** 그렇지요. 최고법원에 있어서의 법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성이 결국 존재가 의식을 구속하기 때문에 존재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부부가 최고법원을 다 장악한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상식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쭙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몇 분이나 계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홉 분 중에 네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아니면 전체 법관 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몇 분이나 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제가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것으로 제가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런 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이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판결이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도 앞으로는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5년 2월 선관위 직무감사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리셨는데요. 위헌판결, 제가 판결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판결에서 선관위가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했고 선관위 내부에 자체 감사 제도도, 감사위원회도 신설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 있게 강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 잘된 판결로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구도하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일치의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엄격한 감사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김민전 위원**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신설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왜냐하면 6·3 지방선거에서 보드시피 선관위는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는 이런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로 인해서 감사원이 감사했던 약 800여 건의 선관위 관련된 지적사항이 다 없는 것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스스로가 해고하고 징계했던 선관위 전직 직원들이 지금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생겼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헌법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최근에 비례대표 봉쇄조항에 대해서도 봉쇄조항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하는 위헌판결을 내리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얘기드리면요 국제적으로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5%이고요. 우리가 3%였는데 그것도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봉쇄조항을 없앤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

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선관위의 판결이 지나치게 정규분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4초 남았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의원내각제 국가는 봉쇄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봉쇄조항의 의미가 그것보다는 더 약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전 위원** 대통령 중심제 아니고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대통령제입니다.

○**김민전 위원** 그리고 대통령제하고 봉쇄조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김민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노경필 행정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을 두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남희 위원** 그중에서도 6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와 소년원 송치 사이의 중간 처우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에 6개월간 감호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 중간 다리가 잘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소년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6호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소년도 시설에 자리가 없어서 소년원 송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여자 보호소년은 더 절박하다 합니다. 여자가 서울가정법원 이용할 수 있는 6호 기관은 두 곳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았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말씀드린 현장의 목소리 알고 계시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2020년 2만 5579명에서 2024년 3만 98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6호 수탁기관은 2026년 5월 기준 16개, 정원이 588명뿐입니다. 늘어나는 아이들을 시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법원행정처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를 보니까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통해서 6호 수탁기관 확대하겠다고 밝히셨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보조금 지원 대상이

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고지원 상태로 바꿔서 국고에서 충분한 지원이 좀 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기를 지금 노력 중입니다.

○**김남희 위원** 아이들이 자리가 없어서 소년원에 보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부족 문제뿐이 아닙니다. 6호 처분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832명 중 중학교 재학생이 406명, 고등학교 재학생이 201명이었습니다. 76.4%가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인데요. 소년원의 경우에는 학적 유무에 따라 시설을 달리 배정하고 학적이 있는 소년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8조부터 42조의3에 따라서 소년원 내에서 외부 학교와 동일한 교육을 받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6호 위탁시설 아동의 경우에는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위탁 학생으로 지정되어 원적교 출석만 인정될 뿐 실질적인 교육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큰 문제입니다.

○**김남희 위원** 아이들이 좀 재범 예방이나 퇴소 후의 학교 적응,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더 심한 7호, 8호, 9호도 학력이 인정이 되는데 6호 처분만 인정 안 되는 점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교육부와 잘 협의해서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의료도 문제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6호 처분 아동의 약 50%가 ADHD를 비롯해서 경계성 지능장애, 우울증, 품행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호 시설에는 상주 의사가 없고요. 정원 100명인 대전 효광원에 임상심리사가 단 1명뿐입니다. 월 1~2회 외부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에 한번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가고 만나질 걸리는 동안 교육은 중단됩니다.

처장님, 현장에서는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의사가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제도 개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이게 저희 법원행정처만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기획예산처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동·청소년 배울 권리,

치료받을 권리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아예 배움과 치료, 다시 살아갈 기회까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보호처분의 목적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배제와 포기가 아니라 다시 배움 기회와 치료받을 기회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요. 부처 간 긴밀한 협의 잘 진행하셔서 소년보호처분이 이름뿐인 보호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받들어서 열심히 그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국회에 나오신 지는 한 1~2년 된 것 같은데 그런가요?

○**국방부조사본부장 박정훈**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계환 전 사령관하고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당시 VIP 경로와 관련된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채해병 순직 한 달 후인 2023년 8월 18일 통화에서 ‘이 새끼—당시 박정훈 단장을 의미합니다—녹음 파일 하나도 없어. 없어요, 없어. 있으면 진작 카드 냈는데. 지금 정훈이가 의지하고 있는 건 OO 하나입니다’라고 대화했습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장 박정훈** 예,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김동아 위원** 당시 이런 내용을 보면 VIP 경로가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 지금 박정훈 당시 대령이 녹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조사본부장 박정훈** 저는 처음부터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경로는 당시에 명확하게 김계환 사령관한테 들은 게 확실하고,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제가 직무배제된 다음에서의 은폐 행위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 언론 보고는 다 알게 됐습니다.

○**김동아 위원** 최근 종합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계환 사령관뿐만 아니라 방첩사가 직접 나서서 박정훈 당시 단장의 모친까지 사찰한 정황까지 확인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특검은 방첩사가 박정훈 준장에 대한 동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어머니가 채상병 유족과 접촉 시도 중이라는 동향 보고를 작성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당시 가족까지 사찰한 정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조사본부장 박정훈** 그건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방첩사 해편도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두 번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최근에 임성근 사단장 항소심 징역 3년 선고되신 거 아시지요?

○**국방부조사본부장 박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결국은 단장님이 생각했던 대로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훈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국방부조사본부장 박정훈**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비록 더디지만 사필귀정, 모든 것이 정의롭게 바로잡혀 가는 모습에 희망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일들이 다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결국은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언론과 국민들이 본부장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은바 직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실망시키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장 박정훈** 예, 바르게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노경필 행정처장님, 최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 선고 하루 남기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판결문까지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하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제가 계속 충격적인 문구가 있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기록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수 의견에 들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예, 들어가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충 의견인가요.

○**김동아 위원** 보충 의견에 들어가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동아 위원** 김건희 사건 대법원에서 언제 선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됩니다.

○**김동아 위원**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되지요.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입니다. 2026년 4월 28일 2심 선고됐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시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요. 왜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고무줄 잣대입니까, 대법원의 정의는? 자기 마음대로 이때는 정의라고 해서 9일 만에 선고하더니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아직도 선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까지 작성돼 있던 사건을. 사법부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행정처장은 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동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기사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고 지금 말씀처럼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후보예요. 항소심에서 요목조목 다 따져서 무죄를 판결했어요. 당시에 소부로 회부된 날이 4월 22일이예요. 4월 22일 소부로 회부되기 전에 기록 보셨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봐도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날짜를 정확…… 작년 일이기 때문에 거의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소부에 배당이 됐어요, 4월 22일에. 그 전에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없지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배당되기 전에 기록을 본 적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 전의 기록을 보지 않지요.

상고이유서가 들어오기 전에 기록을 봅니까, 의견서? 4월 22일 날 배당이 되고 4월 21일 날 이재명 피의자 쪽에서—이재명이라고 해야 됩니까—상고의견서를 넣습니다. 4월 22일에도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됐는데 그날 전원합의체하고 딱 이틀 뒤 4월 24일 날 표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쓰여진 말씀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한다라고 했으면 그런데 왜 지금은 지연하냐고요. 잣대가 같아야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틀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번 꼬인 게 계속 꼬이는 겁니다. 대법관님은 대법관님으로서 하지 않으셨고 종이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표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 개입한 거지요.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 위원이 황당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선에 끼어들면 안 돼요, 법원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끼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넣어 놓으셨으면 이번도 똑같잖아요. 김건희는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 버리고 그리고 이상민은 선고 7일 앞두고 끌어올리고, 선고가 아니라 기간이 3개월 내로 선고가 끝내야 되면 7일 남겨 났고, 그렇지요?

○**박형수 위원** 그만 좀 합시다. 그러면 대통령 재판은 왜 지금 놔두는 거예요, 왜 지연되게 놔두는 거예요?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재판 진행하세요, 대통령 재판.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형수 위원** 대통령 재판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라며.

○**박균택 위원** 헌법이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 뭘 못하게 해요, 잘하게 해 났습니다.

○**박균택 위원** 헌법이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왜 법원 핑계를 댑니까?

○**김태규 위원** 헌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헌법을 보십시오.

○**김태규 위원** 헌법에 그런 거 없어요.

○김민전 위원 어느 나라 헌법이에요, 어느 나라 헌법?

○박형수 위원 헌법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

○박균택 위원 헌법에 없다니요?

○김태규 위원 재판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잣대가 이때 저때 다르시면 안 돼요, 특히 법관은. 그렇지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시다. 대통령 재판 재개합시다.

○김태규 위원 재판하세요. 재판 빨리 재개해서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진보당의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솔 위원 김호철 감사원장님, 국정조사 후속조치 TF요 지금 기한이 정해진 게 없는 겁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이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 끝일 예정입니다.

○손솔 위원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7월 10일까지가 마감 기한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일차적으로 기한을 정했었는데요. 통계감사의 피감사자 면담의 필요성이 여겨져서 피감사자들에 대해서 면담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모두 한 114명 정도 되는데요. 면담 희망 의사를 좀 확인하느라고, 확인하고 또 폭넓고 깊게 듣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조사의 대상은 강압감사 또 증거의 부정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피조사자에 대해서 또다시 강압감사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그분들의 절차를 잘 보장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게 되어서 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손솔 위원 원래는 7월 10일까지가 맞는데 연장을 하게 된 거고,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는데 사유를 잘 못 들어서요. 그러면 114명가량에 대해서 추가 면담 연장을 한 상황.....

○감사원장 김호철 당초에 통계감사 피감사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손솔 위원 그러면 면담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감사원장 김호철 희망자에 한해서 면담을 했고 그 면담은 다 마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손솔 위원 현재 면담은 다 마쳤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예.

○손솔 위원 그러면 마무리 시점을 지금쯤이면 예측하실 수 있겠네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솔 위원 조만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발표를 하거나 조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저로서는 한 달 이내에는 마무리 하라고.....

○손솔 위원 한 달 이내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손솔 위원 알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 된 게 작년인데 마무리 조치가 꼭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감사에 참여했던 인력 19명 중에 10명 그리고 통계감사 참여 인력 32명 중에 12명이 승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승진 과정이 통상적이고 적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여나 이 국정조사의 강압감사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이력이 이 승진의 과정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제가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쳐질 수 있을 수는 없었고요. 그 전에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감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승진이 있었는데 어쨌든 통상적인 시기가 됐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사실은 강압감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성과로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혹여나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손솔 위원** 그리고 노경필 처장님, 충남 천안 11세 아동 사망 사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손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8월 2일과 3일에 11세 아동이 본인이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법원에 할머니에 대해서 퇴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청구를 하였는데 다음 날에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기각하고 할머니에게 상담과 교육을 들으라고 조치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아이가 30시간 가까이 결박되고 숨졌습니다. 저는 법원이 이것을 기각한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원이 왜 이것을 기각했을까요? 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이가 말한 것도 있고 눈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교회라는 구체적인 장소도 특징이 되었는데 법원에서 퇴거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기각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조치 관련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보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국회로도 알려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지요, 아직?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제가 지금 잘.....

○**손솔 위원**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장 왜 안 왔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시기 어렵다는 그런 메모를 받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

○김용민 위원 저는 양해를 못 하겠는데요,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해하고 통치면 법 안 지켜도 됩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 관행이라고 하셨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려고 했다가 제가 뭐라고 했지요? 국정감사에도 오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국회 업무를 잘 몰라서 그게 관행인지 잘 모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오셔야겠네요. 안 오실 이유는 없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김용민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오셔야겠네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대법원장님께서 정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왜 답을 못 해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와야 되는 겁니까, 안 와야 되는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에 출석 의무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출석 의무는 당연히 전제된 것 아닌가요?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안 지키니까, 고위 법관들이 그렇게 법을 안 지키니까 지금 공직 기강이 바로 안 잡히는 거예요. 아까 법관과 대법관은 다르다고 하신 것 같은데 대법관·대법원장부터 법 안 지켜도 된다, 의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법은 그 자체로 다수법 의무가 있는 거예요. 준법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대법원장님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대법원장의 입장을 묻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물었어요.

법에 있으면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도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법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왜 그 대답을 이렇게 못 하십니까?

김건희 기록 몇 페이지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모릅니다.

○김용민 위원 잘 모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확인해서 다음번에 알려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본안사건만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노태약 대법관이 3월 3일 날 퇴임했고 그로부터 지금 168일간, 한 6개월 가까이 공석입니다. 이러면 벌써 한 2000건 내외는 사건 지연이 발생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처장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처장으로 될 때까지는 공석이 없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괜찮다 그겁니까? 그러면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게 지연시킨 이유가. ‘우리는 처장 임명 안 하고……’, 처장도 임명 지연된 것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처장 임명 일부러 지연하면서 사건 지연 안 하는 명분 만들겠다 작전 다 짜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떠나서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아까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쪽이랑 소통했는데 안 만나 줘서 서면으로 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뭐가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지금 법원이 궁지에 몰리니까 왜 갑자기 청와대를 끌고 들어옵니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판단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어떤 협의를 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서면 제청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당일 날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서면 제청은 그전부터 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무슨 서면 제청이 협의가 됐다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왜 자꾸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거면, 이렇게 서면 제청했을 거면 이렇게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하지 그랬어요. 이제까지 시간 끌고 왜 이제 와서 서면 제청 협의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끝까지 합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한덕수 상고심이 6월 4일 날 배당됐고 6월 9일 날 이상민 상고심 배당돼서 이게 처리하려고 했다가 8월 5일 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3개월 못 맞추게 생겼는데 공교롭게도 한덕수 상고심 주심 누구입

니까?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이상민 상고심 주심 누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오경미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어땠습니까?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회의대의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때 어땠습니까? 유일하게 2명 반대의견 냈어요. 유일하게 반대의견 냈던 그 2명이 주심인 재판을 갑자기 회의대 대법원장이 끌고 간 겁니다, 전원합의체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항소심에서 윤석열 재판하고 있는 윤성식 부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대법관 취소하겠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사법 내란 저지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직권남용, 재판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농단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법원이 회의대 1명 막으려고 너무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 막으려고 하다가 몰락했어요. 법원이 그 전철을 밟아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다만……

○김용민 위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두 사건이 전원합의로 회부된 것은 대법원장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윤성식 부장께 사퇴를 종용한 적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대법관후보 사퇴 종용이지요. 그렇게 들리지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의견을 물었으면 사퇴해서 다시 추천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물은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방안도 있다고……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님 재판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다 사퇴하시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사퇴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라고 물은 거지 뭐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꺼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누구에게요?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를 추천하겠다고 서면으로 써서 보낼 때 청와대랑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이야기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교 협의했다면서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당일 날 오전 아침 일찍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당일 날 서면 보내면서, 당일 날 오전 아침 일찍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을 꺼냈다고 하면서 그걸 협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전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전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서 협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네 분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라는 이름은 어제 당일 날 끄집어낸 이름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종 낙천은 대법원장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전부터……

○위원장 서영교 여지껏 협의 계속해 왔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확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손봉기라고 하는 사람은 어제 처음 이름을 끄집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누구 이름을 끄집어냈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4명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분을 놔두고 어느 분이 제일 좋은지 계속 협의를 할 수, 협의하는 게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을 서면에다 넣어서 보낸 것 자체가 어제 처음 꺼낸 이름이라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진술을 강요를 하세요? 진술을 왜 강요를 하시냐고.

○김승원 위원 뭘 강요를 해요?

○김태규 위원 강요지 이게 뭘니까, 지금?

○김용민 위원 그게 제대로 된 협의였냐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그게 아니라, 제가 팩트를 체크하니까 당황스럽지요?

○김태규 위원 뭘 당황스럽기는, 하도 같잖아서 그래요.

○위원장 서영교 팩트를 체크하니까 당황스럽지요?

○김태규 위원 웃음이 나와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위원장 서영교 자꾸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게 되는데 어제 처음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을 꺼내 놓고 여지껏 협의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우리하고 날짜 정할 때는 잘도 협의하시더니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 협의했다고 그러고.

○위원장 서영교 4명의 후보가 있어요. 대통령이 4명의 후보 누구든 제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4명이 다 제청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합이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되지, 제청하면 되지 왜 합이 맞는 사람을 제청 안 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다가……

○김태규 위원 합이 맞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인데요?

○위원장 서영교 지금 말하는 게 합이 맞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을 계속 제청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규 위원 누구예요? 찍어 가지고 답을 가르쳐 주시지 그러면, 제청권 행사하지 말

라 그리고.

○**위원장 서영교** 그 내용이 이야기가 돼서 계속 있으면, 합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제청을 하면 되지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고집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처럼 계속 협의했다고 하더니,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은 어제 처음 끄집어낸 것 아니에요?

○**김태규 위원** 그냥 알려 주세요, 찍어 가지고 누구하라고, 누구 제청하라고. 그렇게 알려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을 어제 처음 끄집어내놓고 협의를 계속했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게 됩니까?

○**김태규 위원** 대법원장 제청권 아닙니까. 자기 권한 아닙니까. 권한 행사한 것 아닙니까?

○**김승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김태규 위원** 왜 조용히 해요, 지금?

○**위원장 서영교** 여지껏 대법원장이 자기 고집을 피운 거예요.

○**김태규 위원** 지금 시간도 멈춰 놓고 뭐 하는 겁니까?

○**박은정 위원** 위원장님한테 예의 좀 지키세요.

○**김태규 위원** 예의 지키게 만들어 주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부터 똑바로 진행하라 그래요.

○**박은정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위원** 뭘 말만 하면 본인 혼자 다 질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위원장 서영교** 팩트 체크를 해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 팩트 체크고 뭐고 간에 의사진행……

○**위원장 서영교** 거짓말이 있으면 팩트 체크를 해야지요.

○**김태규 위원** 이게 무슨 의사진행입니까, 지금?

○**박형수 위원** 혼자서 다 해요, 아주.

○**김태규 위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세요, 그냥

○**위원장 서영교** 당황스럽습니까?

○**김승원 위원** 좀 들으세요.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형수 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 말 제지하느라고 힘 다 빠져요, 진짜.

○**김태규 위원** 그것 작전인 것 같아, 힘 빼려고. 마이크 잡았다 이거야.

○**위원장 서영교**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초선은 가만 있어요.

○**김태규 위원** 여기 초선은 나 혼자입니까?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이니까 그냥 가만 있어요.

○**주진우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보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성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왜 서면으로 제청했냐 하는데 직접 대면해서 제청하겠다고 대법원이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반대한 겁니까, 반대로 제청하러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거부한 겁니까? 절차니까 이것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아까 합이 맞는 사람 있으면 그대로 해 주지 그랬냐는 질의까지 하시는데 합이 맞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판결해 줄 사람, 자기 성향과 맞는 사람을 딱 찍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 안 할 거면 청와대에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때요?

양쪽 당사자가 청와대 아니면 대법원인데 대법원에서 거부한 적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개월이나 공백이 있었는데 진작에 서면으로 하지 그랬냐라고 했는데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든 양보를 하고 특정 한 사람만 찍지 않고 복수 후보 정도 댔어도 제청권을 보장받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협의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협의도 완전 불가능할 정도로 청와대는 하나의 의견만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 협의를 어떻게든 성사시켜 보려고 5개월 시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몇 번이나 협의 시도를 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잘 모르겠고 취임한 이후로는 한 네댓 번 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네다섯 차례면 협의하고 나서 또 실무진들끼리 조율하고 접촉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청와대는 의견 하나도 안 바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답변 못 하는 상황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게 다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고, 5개월이나 협의를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삼의 방법을 찾아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면 새로운 절차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전화를 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주진우 위원** 아까 전화로 의사를 물어본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거는 무슨 답변을 유도한 거다, 강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하이닉스 직접 얘기했잖아요. 광주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유도하고 권유했다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무조건 강압이고 협박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손봉기·김성수 대법관후보가 이미 제청이 됐고 국회에서 이거를 잘 논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고 이분들은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정도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있고 인품이나 실력이나 팬클럽은 분이니까 제청한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본질을 피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헌재사무처장님, 입틀막법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들어 봤습니다.

○주진우 위원 헌법상 사전검열금지 원칙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표현 이전에 검열을 하지 마라는 원칙입니다, 행정권이 자의적으로.

○주진우 위원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게 원칙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입틀막법과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굉장히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각하된 걸 보니까 너무 쉽게 각하를 했어요. 피해가 현실화된 게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정부 비판 글들은 알아서 사라지거나 SNS 채널이 폭파되거나 계정이 정지되거나 영구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피해가 현실화됐으니까 지금부터는 헌법소원의 어떤 요건을 갖춘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런 적격을 갖춘 사람이 청구를 하면 본안 판단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국민 다수의 피해가 직결되는 사건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제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재판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님이 안 계시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최근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수차례 학대 신고와 경찰의 접근금지명령 신청에도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기각된 날 사망했거든요. 아동학대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이유, 기각 결정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서 보듯이 국가의 후견적·보호적 사회적 약자, 아동에 대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경기도 여주시에 추진 중인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 지원 시설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사건 당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후견 복지 기능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데 이게 위기 아동과 가정을 처벌에만 맡기지 않고 선제적·후견적 관점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신축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 회계연도 본 사업 예산 중에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건설 보상비 25억 18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불용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 8월 착수 예정이었던 실시 설계가 현재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시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박은정 위원 이게 당초 계획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대법원의 계획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8개월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향후에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도 추가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내 착공은 어렵고 2028년도에 약속된 준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행 주체인 대법원이 책임 의식을 갖고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기한 중단된 이 사업의 재개 방안이나 토지 매입 완료 시점, 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국회에 제대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처장님,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돌아가서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철저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이번 결산 자료 중에서 노후된 등기 전산 장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액 중에서 297억 3700만 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21억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13억 3800만 원이고 임차료가 3억 31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같은 불용에 대해서 아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등기 특별회계의 일시적인 세입 부족에 대응해서 자체 구조조정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특별회계 세입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대법원 차원에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부분 하시고.

감사원장님, 감사원의 감사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예.

○**박은정 위원** 법정 기한이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작년 청구권 심사 청구 접수가 2046건인데 그중에 한 1023건 정도가 취하되었고 969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는 2024년 이월 건수 대비 41.4%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 건수가 거의 반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법상 3개월 내에 감사가 제대로 끝나야 되는 건데 최근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관련 감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거 맞지요? 그게 감사원에 저희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감사원장님, 이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래서 감사원에서 하도 감사를 안 해 가지고 외교부에서 자체 감사로 그 자녀의 취업 합격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해 가지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김호철** 제가 심우정 총장 자녀와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살펴보시고 감사원……

○**감사원장 김호철** 감사 청구가 되었는지……

○**박은정 위원** 감사 청구가 되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가 되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자체 감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감사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수사 중이네, 어찌네 이런 이유인데 외교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도 기다리다가 안 돼서 자체 감사를 해 버렸거든요. 감사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살펴봐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김호철 예.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처장님, 좀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를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협의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할 계획이라고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언제 누구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정실 쪽에서는 손봉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분을 제청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제 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제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거기를 하게 될 것 같다 그 얘기는 협의를 안 하고 내가 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그냥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협의라고는 안 하지요, 보통.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전에……

○박균택 위원 제청 예고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꼭 손봉기 후보자를 짚지는 않았지만……

○박균택 위원 그러면 손봉기라는 이름 얘기도 없고 그전에 그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도 없고 제청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는 협의는 없었고 오늘 제청할 거라고 미리 알려 준 정도 아닙니까? 그걸 협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협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듣지도 못했고 상의도 못 했던 청와대 관계자를 끌어 들여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옳은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협의를 했지만……

○박균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서면 제청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과 협의를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민정수석에게 서면 제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균택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서면 제청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였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제청을 하기 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제 처음으로 서면으로 이것도 제청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서면 제청은 그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박균택 위원 협의라는 것은 구두로 협의가 오가는 것이고 최종 제청을 하기로 협의가 되면 그때 서면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균택 위원 협의는 구두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협의가 마쳐진 상태에서 그것을 서면으로 정식 통보하는 것, 이게 외형상의 제청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균택 위원 그런데 오늘 제청을 할 것이다. 그 전에 얘기도 나눠 본 적이 없는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 서면 방식으로 제청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일방적 통보였다고 봐야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협의하고 했다고 마치 청와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위원님 말씀은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협의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손봉기 이름을 어제 꺼내면서 서면으로 보내겠다, 서면으로 제안할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협의했다, 협의라는 표현마저 쓰면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안 만나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균택 위원 제가 느끼는 청와대 사람들의 어떤 참모들의 품성에 의하면 대법원장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날 때에는 합의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난 것이지 두 분들이 가볍게 커피, 티타임 갖듯이 한번 얘기나 해 봅시다 해 가지고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진을 통해서 협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합의가 될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받기 위해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의 분위기, 합의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때 날을 잡자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면담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역시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재판하는 방식,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과 다름이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힘 박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택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오전에 드리던 질문 좀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언론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던 그런 관례를 깬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관례라고 하는 게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관례상의. 과거의 그런 관례가 필요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대법관의 제청에 있어 가지고 정말 헌법 규정에 있는 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사전에 협의해 나가는 관례는 이제는 정말 위험한 관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28년부터 4명씩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26명으로 늘어난 대법관 중에 1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기존의 관례처럼 그렇게 청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한다면 결국 이재명 사람 심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이. 그래 가지고 대법원에서 하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사실 이런 관례가 국민들은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는 공론화되는 바람에 ‘아, 그런 관례가 있었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대법원장께서 그 관례를 본인이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도 앞으로는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안 하시는 걸로 선언을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감사원장님,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2012년도에—벌써 14년 전이네요—대한축구협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적절한 접대 의혹을 인지했는데 그것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예, 언론은 보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봤습니까? 그때 내용에 보면 감사 과정에서 축구협회 관계자와 감사원 담당자 사이에 학연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연락도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보도 내용이고요.

그래서 4년 뒤인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부적절한 접대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2017년에 경찰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겨서 무혐의 처리됐고 부적절한 접대에 따른 배임 혐의마저도 그냥 불기소처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아주 옛날부터 축구협회의 문제를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불신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 당시 감사 축소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엄중한 조치나 또는 수사기관 고발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당시 감사반에서 심판 성접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당시 감사에 관련된 분들이 대다수 퇴임을 하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릴 듯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축구협회, 지금 많은 불신 받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곽규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국가기관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 한 번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국방부장관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차관입니다.

○**박지원 위원** 장관 어디 가셨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계속 계시다가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나갔다 와서……

장관한테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요. 그냥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처장님의 그 모호한 답변이…… 아까부터 제가 지적했지요, 이제는 사실대로 그냥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듣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돼요. 그런데 왜 그걸 본인 입으로 답변을 못 하시지요? 저는 어제 아침에야 손봉기 이름이 나오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제청하려는 A라는 인물을 했어요. 청와대에서는, 이름 얘기할까요? 김민 기지요? 거기를 해야 된다고 고집해. 그러면 다음 협의 할 때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될까요?’ 또 그 사람을 고집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제 아침에 손봉기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절차를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형수 위원** 공격을 이렇게 당하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고소돼 가지고 법정에 가서 그 얘기 할 겁니까? 수사받으면서 그 얘기 할 겁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는 공론화해야 된다. 곽규택 위원도 좀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간에 진행되었던 이 제청 절차가 각자가 정해 놓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탈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협의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이제 공론의 장으로 올려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제청권 없애자는 얘기도 했어요. 입법례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헌법에 있는 제청권이라면 이것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게 우리 법조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평행 상태로, 제청 안 한 상태로 계속 갑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청권 행사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법상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 상태대로, 제청 안 한 상태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과 대통령 측에서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계속하잖아요. 아까 누가 대법원의 행위를 깡판 친다고 그랬는데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위가 깡패짓이에요. 아니, 이 상태로 계속해서 협의가 안 돼서 가면 직무유기로 탄핵하겠다고,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하면 제청권은 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법원행정처장한테,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도 판단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사법권 독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니까? 법원행정처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 공선법 파기환송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건 하는 데 7만 페이지되는 그런 사건을 9일 만에 판결했다고 매일 공격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것 재판연구관들이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30일이 넘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형수 위원 30일 넘게 재판연구관들이 검토를 합니다. 대법관들이 어떻게 7만 페이지 지나 되는 기록을 다 봅니까? 재판연구관도 다 못 봐요. 우리가 오늘 회의하면서 여기 기록 이렇게 많은데 회의자료 다 봅니까? 이것 다 안 봤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회의한 게 효력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나 같으면 기록 볼 필요도 없는 사건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쟁점 두 가지지요.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뭐 어떻게 사진 했는데 조작됐더라’,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것은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냐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직무유기로 걸겠다고 협박했다’. 그게 어떻게 과장이 됩니까? 정황이 과장이 됩니까,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건데? 그래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기록 안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데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법부 독립에 그런 태도가 도움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때로는 직을 내놓고 목숨 내놓고라도 지켜야 되는 게, 그래야지 사법권의 독립, 삼권분립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처장님, 이번 대법관 두 분 제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이지요? 이제 없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임기로 치면 5월에 천대엽 전 처장이 퇴임을 하니까 그 뒤에 6월 달에 대법원장은 퇴임하십니다. 한 달 정도……

○김승원 위원 2023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두 분을 제청하려고 했을 때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

그다음에 TV조선에서 계속해서 연달아 ‘제청권은 임명권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 능력보다 이념 위주 인사 논란’ 이렇게 보도를 쏟아 내고 있고 ‘윤 대통령, 김명수 마지막 제청권에 제동. 이유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좌파 성향의 이념적인 대법관후보를 제청한다’ 이런 보도를 연속해서 내고 있고. 그래서 그때 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 제청을 바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승원 위원 모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승원 위원 아까 2명을 또 바꿨잖아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2명을……

○김승원 위원 협의 중에,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그 2명을 바꾼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김승원 위원 그것은 모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승원 위원 그런데 TV조선에서 뭐라고 하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한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다수의견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다’ 이렇게 하고 이때는 대법원장을 비난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년간 능력보다는 이념 위주의 인사를 해 왔다. 결국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

계속 연속된 보도에 TV조선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이념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결과 국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추락하는 법원의 권위 회복, 판결 신뢰 회복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주 대놓고 말을 해서 결국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TV조선 보도를 보면 또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적인 보도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국민의힘 위원들도 계시지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멘트가 아마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건 아마 확인을 해 보면 될 텐데.

어쨌건 지금 제가 볼 때 협의를 하는 이유는, 제청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의 부분이고 결국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맞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더 많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법관이 재판을 하라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런 전체의 절차를 국회는 혹은 대통령실과 같이 조율을 해서 존중받아야 될, 존경받아야 될 대법관이 매끄럽게 임명이 되어서 권위 있는 재판을 하라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도저히 진짜 납득이 안 되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전에 조희대 전 대법원장이 이균용을 대법원장후보자로 추천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통령이 한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웬 부동산 투자가 많고 뭐 이렇게 편향된 판결문도 많고 너무나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후보자라서 그 후보자가 탈락된 것도 기억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기억납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 국민의 검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장이 본인의 제청권만 고집하면서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김기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외골수로 고집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정치 한가운데로 사법부를 밀어 넣는 것 아닙니까?

4명의 후보자는 아까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등 사회의 법조계의 식견 있는 사람들이 다 검증을 해서 추천한 분들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서 지금 협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고집, 외골수밖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분 중에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서 비로소 이 사태까지 초래된 것이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손 후보자를 어제 아침에서야 떡하니 해 갖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발을 일으키고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추천함으로써 이전 추천위원회는 해산이 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추천하면 바로 해산이 됩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대법원장 의도는 뭐니까? 이제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을 하든 아니면 추천위원회 해산이 됐으니까 기존 후보자 3명은 완전히 다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함에 쓸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로…… 손 후보자는 자기 대구 후배고 또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혹은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또 제청을 해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 사법부를, 대법관을 그런 오해를 받는 사람을 갖다가 제청을 해서 이 지경까지 만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이 일을 그렇게 잘 못 하세요? 잘 해결해 주셨어야지요. 안 그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시킬 때는 대통령후보 그만두게 할 생각이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파기환송시킬 때 대법관 중의 한 명이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아까 연구관들이 30일 전부터 검토를 한다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여러분은 상고이유서가 들어오기 전부터, 연구관들은 상고이유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검토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연구관 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5년 동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본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형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상고이유서가 안 들어왔는데 연구관들이 그 재판기록을 봅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상고이유서는 4월 10일 날 제출됐어요. 그러면 4월 10일 날 상고이유서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본다고 그러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이재명 후보 쪽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들어오고 보는 게 기본 아닙니까? 대법관 1명이 사건을 몇 개나 합니까? 1년에 4000개 정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투성이예요, 거짓말투성이.

직접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파기환송에 손을 든 사람, 노경필 대법관 아니었습니까? 그랬지요? 노경필 대법관이 이재명 파기환송에 손을 들었지요? 언제부터 기록을 봤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돼요.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답변·의견서는 4월 22일 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부에 배당된 게 4월 22일이고 전원합의체 회부가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4월 22일에 이재명 후보의 답변서가 들어갑니다, 의견서가. 그런데 4월 24일에 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표결을 하고 이재명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부에 배당된 게 4월 22일입니다. 그날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립니다, 4월 22일에. 이재명 쪽의 의견서가 들어간 게 4월 22일입니다.

떡위 줄 수 있으면 떡위 보세요.

그런데 4월 24일 날 표결을 해 버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이것 완전히 법 위반 아닙니까?

종이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전자기록으로 봤으면 로그인

기록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로그인 기록 보여 줄 수 있어요? 로그인 기록 보여 줄 수 있어요? 당시에 기록을 미리 봤다면요, 전자문서로. 로그인 기록 보여 줄 수 있어요? 바로 지난 업무보고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저에게 ‘종이기록으로 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전자문서로 보는 것은 법이 2025년 10월에 시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켜 놓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의 밤에 여러분은 다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 법원의 재판 과정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했고 그리고 지귀연을 통해서 윤석열을 풀어 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파기환송을 시켰는데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덕수를 지켜 주려고 애를 썼고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를 대통령후보로 옹립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밝혀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김건희 무죄 주고 있고 이상민·한덕수, 15년·9년 받았는데 그것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서 또 이재명 때처럼 이들을 풀어 줄 결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저히 이재명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게 조희대 생각 아닙니까? 도저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제청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이제 와서 협의도 안 하고 이름 어제 처음 내놓은 사람을, 그전에는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겠지요.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파기환송시켜 놓고 그리고 바로 고법에서 파기환송된 다음 날 기일 잡으려고 했으나 여론이 그게 안 되니 그것을 포기했고 한덕수 대통령후보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그것 안 됐고 그리고 세상은 바뀌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내란의 밤에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윤석열을 풀어 주고 사법쿠데타 두 번째 일으키고 지금 또 사법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파기환송, 이재명을 지키려고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재판 보셨어요, 여러분?

○박형수 위원 시간 좀 지키세요.

○위원장 서영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그런 재판 해 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형수 위원 도대체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그런 재판 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재판이 어떤 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교 이틀 만에 표결하고 4월 22일 배당되고 그런데 그전부터 기록 봤다고 그리고 종이기록으로 보는데 전자기록으로 보지도 않고 로그인 기록도 내놓지도 못하고. 이재명 후보 쪽의 의견서가 4월 22일 날 들어왔는데 4월 24일 날 표결해서 끝내고, 5월 1일 날은 여러분이 발표만 했을 뿐이에요. 4월 24일에 여러분은 표결 끝냈어요. 전원합의체로 올라오고 바로 표결했지요? 당사자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며칠이나 논의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전원합의체는 두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4월 22일 날 전원합의로 끌어올린 후 한 번하고 두 번째

4월 24일. 뭘 충분히 논의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후보 자리인데.

○**곽규택 위원** 충분히 했네.

○**위원장 서영교** 그게 충분한 겁니까?

○**곽규택 위원** 그게 충분한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그것 충분하게 논의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충분하게 논의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대통령후보자라고 20일 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저렇게 자꾸 하시나.

○**위원장 서영교** 그게 충분한 논의입니까? 다시 이야기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충분한 논의입니다.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했는데 그러면 4월 23일에는 뭘 했습니까? 뭘 했길래 충분한 논의를,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몇 페이지짜리 기록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7만 페이지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7만 페이지라고 들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본인이 그것 담당하는 사람이면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려면 그 내용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민전 위원** 언제까지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오늘 다 증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노경필 대법관이 사법쿠데타의 한가운데 있었음이 오늘 다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도 대법관을 계속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사법쿠데타 한 적 없습니다.

○**김동아 위원** 9일 만에 선고한 게 잘한 겁니까?

○**곽규택 위원** 왜 또 때로 질문해요. 빨리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쿠데타를 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쿠데타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김동아 위원** 뭘 잘했다고 저렇게 대답합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고.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

○**위원장 서영교** 윤석열은 풀어 주는 게 맞습니까?

○**김동아 위원** 역사상 그런 재판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잘했다고.

○**박형수 위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왜 또 얘기하고 더 하게 만들려고 그래. 좀 가만히 있어요, 그만하시게.

○**위원장 서영교**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양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이 있지만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어서 재보충질의를 약 3분 정도로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승원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박형수 위원** 간사 간에 양당에 돌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둘 할게요.

○**위원장 서영교** 재보충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두 분씩 하시되 비교섭에서도……

○**박형수 위원**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김민전 위원**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법쿠데타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시는데요. 대통령이 낙점하는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면 그게 사법쿠데타 아닌가요? 지금 외부에서 사법부를 향해서 쿠데타 하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김민전 위원** 대답 안 하실 줄 알았고요.

조금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지금 법무부장관이 형사절차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판사들도 재판하면서 수사를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발언은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요? 법무부장관이 판사들의 직무를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 건가요?

또 다르게 본다고 하면 정부여당이 형사절차법 등을 사고 쳐 놓고 사법부에 지금 이것 다 책임지라고 떠미는 것 아닌가요? 왜 정부여당이 사고 친 것을 사법부가 다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판사가 실제로 수사를 할 역량이 됩니까? 환경이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에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가운데에서 피해자들을 일일이 다 해서 이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그야말로 1건당 판결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며칠이나 걸리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건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김민전 위원** 평균적으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썽요, 정확한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전 위원** 아마 오늘 너무 오랫동안 힘드셔서 잘 기억 안 나실 텐데요. 평균적으로 200일이 넘는 것으로, 300일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민전 위원** 그런데 판사가 일일이 재판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의 재판관의 숫자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듣다 보니까 빨리 법관을 임명 안 한 것은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임명 안 한 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주요 자리들의, 제가 조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네요, 자리들의 공석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에 그런 잣대를 댄다라고 하면 행정부에도 마찬가지로의 잣대를 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김민전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잣대는 동등해야 되고 동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법원에 대해서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은 것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뭔가 법원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원은 계속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임명을 위해서 만나 달라, 협의하고 했던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결국은 사고는…… 사법쿠데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판사의 양심을 찢는 일이 과연 있었는데,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까요?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왜곡죄로 판사들의 양심을 찢어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법원의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 이것은 거의 베네수엘라급으로 하겠다, 대법원을 찢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사법쿠데타를 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사법제도를 찢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정부여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솔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벌인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관례를 꼭 지켜야 하나, 관례인 게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민전 위원** 법사위원장 주세요요.

○**손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법사위원장을 국회의 관례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파행시켰던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어떤 한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국회의 아름다운 관행이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관행을 지켜야 하지 않냐라고 엄청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하는 관행은 관행일 뿐이고

의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논리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것 하나 여쭙볼게요.

노경필 처장님, 민생 비송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경매, 개인회생 이런 거요.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손솔 위원 2020년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건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 사건은 3개월이 늘고 개인회생도 1.2개월이 늘었어요. 개인회생과 경매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들을 정말 피가 마르게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조사했을 때 29세 이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가 93%가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자살충동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좀 대단히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마 사건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솔 위원 사건이 아니고 사건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니까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사건이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솔 위원 인력을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저희들이 기재부와 계속 얘기를 해서 인력 확충을 노력 중인데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기획예산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막힌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거든요.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사건도 많아지고 분초가 달려 있고 사람들의 정서적인 고통과 사실 생사까지 가를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차관입니다.

○박균택 위원 국방개혁 현안들이 참 많은데 주제의 무게에 비하면 상당히 조용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나 차관님 또 국방부의 참모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또 기대의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사합니다.

○박균택 위원 광주 군공항 분산 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 문제가 또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 상황이나 특별한 문제점 이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광주 군공항에 아시는 것처럼 공통 작전기지 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 측과 협의가 필수적인데요. 현재 미 측과 협의는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받거나 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 가면서 우리 정부의 메가 산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성사 잘 되게끔 자신감은 있으신 거겠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저희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부처까지 힘을 합쳐서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균택 위원** 국방부의 능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오늘 많이 지루하시겠습니다. 질문이 다 법원으로 가는 바람에 감사원의 역할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질문할 시간을 별로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감사원 직원들, 그의 어떤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감싸기 감사, 편파 감사 이것을 자행하던 공무원들을 타이거파라고 내부에서 부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타이거파 문제 있는 간부들은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도 남아서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임명 이후에는 인사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실적 위주로 제가 인사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시기에 인사·감찰권 남용에 의해서 특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그에 맞게 적절하게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아직도 완료가 다 된 것은 아닌 상태입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현재 국정조사 후속 TF를 하고 있고 그것도 과거의 강압 감사 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고 엄정조치 안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인사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택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 지난 3월에 재판소원제도 시행된 이후에 7월 20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581건 그런데 그중에서 1302건, 82.3%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박규택 위원** 그런데 정식 심리 회부된 것은 15건, 0.9%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때도 질의를 드릴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판소원 등 제도가 시행된 그런 이유 등 때문에 업무가 폭증했다, 그래서 헌법연구관은 20명 늘려 달라, 일반직 공무원은 16명 증원해 달라 그리고 종로구 별관 거기도 있는데 현 청사의 테니스장 부지에 청사 증축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박규택 위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판소원을 하고 있는데 재판소원 사건이라

는 것은 전국에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자기 어떤 재판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해 가지고 그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재판소원을 한번 해 보려면 또 서울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출신 고액의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재판소원 하시면서 이렇게 인력도 필요하고 증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세종시 정도가세요,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정도면 전국 각지에서 한 2시간 내로 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자기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님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지금 증축에 관한 문제는 재판소원으로 인해서 일시 장소·공간이 협소해서……

○**곽규택 위원**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굉장히 서울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게? 한때 대법원은 경북 쪽에 헌법재판소는 전북 쪽에 이렇게 하자는 말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저는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서울 요지에 종로구 땅에다가 증축을 하는 비용이면 세종시에 좋은 건물 짓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위원님, 증축의 문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임차를 해 있기 때문에 그 임차료를 줄이기 위해서……

○**곽규택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판소원 하신다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하셨으면 최소한 0.9% 정식 심리 회부, 이걸 안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걱정하시는 대로 4심제의 우려를 저희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우선 감사원장님,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에 무자비한 인권침해 감사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마련이 되신 거지요?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이 2021년도에 86건에서 2023년도에 551건 그다음에 서해 감사 등 조작감사에는 682건의 그런 것은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책이?

○**감사원장 김호철** 문제를 시정하는 내부 규정들은 다 손을 보았고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제화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감사방해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다’는 문장이 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그에 관한 문제 의식은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쟁점을 가지고 아마 헌법소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장님, 대법원장님 안 나오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방금까지도 못 나오신다고 왔습니다.

○**김승원 위원** 제가 아까도 사례 얘기했지만 윤석열 때는 대법원이 굴복해서 제청 대상자를 바꾸더니 왜 지금에 와서는 209일까지 계속 지연시키면서 결국에는 늦게까지 서면 통보를 하는 등 이렇게 파탄을 만드는 겁니까?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린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제 관행은 없다라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조금 있으면 국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 나오셔야지요. 저희가 관례에 따라서 인사만 하고 이석을 시켜 드렸지만 관행 다 무시하면 이제는 대법원장도 나오셔서 국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 사안 포함해서 대법원장에게 하루건 이틀이건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시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하여튼 오늘은 안 나오신다는 말씀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유는요? 사유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무튼 저희가 법원과 예컨대 압수수색 사전신문제라든가 조건부 석방제라든가 어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이 서면 제출로나 일방적인 그냥 제청 통보로 그냥 모든 게 다 막혀 버리고 다시금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지금 사법부의 모든 행위가 지금 의혹에 휩싸여서 다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게 답답하고 법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다 국민들의 의혹이 따가운 눈총과 비난이 있으니깐 이걸 갖다가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보충질의까지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현재 대법원 대법관 구성 현황이에요.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두 명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지요. 다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지막 사법 쿠데타의 그 한 장면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패싹했다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상고이유서가 들어

오기 전부터 본다고요? 그게 재판의 독립입니까? 상고이유서가 들어오기도 전부터 본다고요? 그게 재판의 독립입니까? 4월 10일 날 상고이유서가 들어왔는데 그 전부터 본다고요? 엄연히 이거는 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의견서를 4월 22일 날 냈어요. 그런데 4월 22일 날 전합을 합니까?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 최소한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를 내면 그 의견서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를 안 내고 합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다 법관을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아주 잘 하셨어요. 노경필 대법관 시절 노경필 대법관이 충분히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되고, 4월 22일 날 전합인데 그걸 그전에 봐도 됩니까? 그전에 봐도 되는 게 이게 법으로 맞습니까? 모두 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어서 충분히 상고이유서가 들어오고 의견서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봐야지 그전부터 본다고요? 그전부터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겁니까? 어디다가 갖다 둘러대세요. 특별히 대법관은 잘못하면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대법원에 검사가 상고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의견서 내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다 훑어보고 판단을 다음 날 낼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상고된 것에 대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내일모레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기본권이 침해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상고이유서가 들어오기 전부터 본대요.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상고를 하기도 전부터 기록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형수 위원 상고는 이미 돼 있잖아요. 시간도 지났는데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자꾸 하시네.

○위원장 서영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사건이면 특별히 더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면 되시겠습니까?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께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감사원 원장님 그리고 국방부차관님, 오늘 다른 분들은 말씀할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간단히 이 결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말씀을 약 1분 정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부터 해 주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오늘 결산 보고를 드렸고 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격려와 지도를 저희 헌법재판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 잘 새겨들겠습니다. 우리

법원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김호철 결산 보고와 업무보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를 저희 감사원 운영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후반기에 산적한 국방 개혁 과제들이 많은데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국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어서 법무부, 법제처, 공수처에 대해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이 주신 세금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 국민들께 이자 붙여 돌려 드릴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은 더 정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전 김승원 김용민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손 솔 주진우

○출장 위원(1인)

윤상현

○청가 위원(1인)

이성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김호철

사무총장 정상우

제1사무차장 홍성모

제2사무차장직무대리겸공직감찰본부장 윤승기

국민감사본부장 임동혁

기획조정실장 이운재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 이두희

차관보 원종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법무관리관 이광표

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 박정훈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원장 김종대

국방부검찰단

단장 안지영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차장 기우중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임선지

사법정보화실장 김우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승원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사무차장 지성수

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심판지원실장 김소연

기획재정국장 하태진

행정관리국장 최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이상 4건 7월 30일 회부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15)

7월 31일 회부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8)

이상 2건 8월 4일 회부됨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2026. 8. 4.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5)

8월 5일 회부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5)

이상 4건 8월 6일 회부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0)

8월 7일 회부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3)

8월 11일 회부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8. 13.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제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6. 8. 13.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제출)

이상 4건 8월 13일 회부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3.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0)

8월 14일 회부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9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7)

이상 4건 8월 18일 회부됨

○청원 회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2026. 8. 11. 이윤석 외 51,01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2)

8월 13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6511호	상법 시행령	법무부	2026.7.21.
총리령	제212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2026.6.19.
	제213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2026.7.21.
부령	제112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2026.8.11.

구분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입법예고 기간)
대통령령 입법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2026. 7. 24. (~9. 2.)

○보고서 제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고발 사건(법제사법위원회 고발) 수사결과 보고

(2026. 7. 31. 경찰청장 제출)

국회 고발사건 수사결과 보고

(2026. 7. 31. 대검찰청 제출)

국회 고발 사건 중간보고 및 수사연장기간 초과 진행사유 제출

(2026. 8.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제출)